

이달의 민변

96년 12월호

특집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국제인권 고문방지위원회 참가보고
자료 안기부법개정 의견서

이달의 민변

96년 12월호

민변
법률
변호사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례

권두언 그 나라의 이런 변호사 - 한승원 • 7

특집 1

- 표현의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관련법 - 장호순 • 9
표현의 자유와 매체물에 대한 규제 : "청소년 보호법안" 검토 - 이형근 • 19
표현의 자유와 인권영화제
①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 류은숙 • 36
② 대항문화로서의 인권영화제 - 조광희 • 40
③ 감상문 공모작 2편 - 이형근 • 44

특집 2

-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경과보고 - 사무국 • 48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기
① 감상(感想) - 아주사와 가주유끼 • 50
②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성공을 축하하며 - 후지모토 다다시 • 52
③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참가하며 - 다나카 시케이토 • 54
④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참가하며 - 가와하라 이쿠로 • 55

제일교포간담회

- 제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 배훈 • 57
제일한국인의 국내법상 지위 - 유옥 • 63
제일교포간담회 참가기
① 한국측 참가기 - 박성호 • 71
② 일본측 참가기 - 배승호, 윤영화 • 74

회원의 변론경험담 심리불속행이라는 비상구 - 이제명 • 76

위원회 기획기사 경제정의위원회 소개 - 경제정의위원회 • 78

서평 오래된 미래 라디크로부터 배운다 - 조홍식 • 82

한상범, 바보놀이공화국 - 정주식 • 85

외부에서 본 민변 시민과 변호사 - 김기식 • 88

인권영화소개 세친구 - 이유정 • 92

신입회원 소개 및 추천 ① 민변에 들어서며 - 윤학 • 96

늦은 만남 - 백승현 • 97

② 가입인사를 드립니다 - 정용태 • 98

꾸준한 연찬, 성실한 참여의 본보기 - 박연철 • 99

③ A Rolling Stone Came To A Halt. - 조상희 • 100

그윽한 향기가 배어있는 남자 - 윤기원, 유선호 • 100

사무국 보고 • 101

성명서 ①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침해에 대하여' 성명서 발표 • 106

② '진판스님'에 대한 불법구금 및 재구속 사태에 대하여 • 108

자료 ① 정보공개입법청원 - 언론위원회 • 109

②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입법청원 - 언론위원회 • 124

③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 차지훈 • 152

④ 獨島 領有權 문제 - 정인섭 • 160

⑤ 안기부법개정의견서 - 안기부법개정대응임시특별위원회 • 168

⑥ 民主化와 教免 - 이국운 • 175

⑦ 반분기회계보고 - 사무국 • 187

⑧ 감사보고 - 사무국 • 190

⑨ 시화호 무단방류금지 가치분 신청서 - 윤종현 • 193

그 나라의 이런 변호사

한승현

지난해 11월, 민변이 주최한 한일법률가교류회에서 일본측은 자국에서의 '민주법률가운동'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일본에서 법조인의 반체제적 변호활동 내지 사회개혁운동을 말함에 있어서 먼저 손꼽히는 사람은 아마도 후세다쓰지(布施辰治)변호사(1880~1953)일 것이다. 그리고 불의한 군국주의에 정면 도전한 마사끼 히로씨(正木 ヒロシ)변호사(1896~1975)도 반골법조인의 대표급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사람에게서는 연배의 차이와 무관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후세씨는 주로 다이쇼(大正)시대에서 쇼와(昭和)전기에 걸친 활약이 돋보였음에 비하여 마사끼씨는 쇼와의 중기 즉 중일전쟁 이후에 활동했다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체제저항적이었고, 변호 활동으로 말미암아 형사피고인이 되었으며, 문필활동이 왕성하였을뿐 아니라 개인잡지를 발행한 것까지 닮아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하는 것은 두 분이 모두 일본에 의해서 빚어진 한국인의 억울한 처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호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후세 변호사는 메이지(明治)사회주의운동의 물결에 젖어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사건과 타민족 차별억압사건을 주로 변호했다. 그리고 법정활동외에 보통선거, 인권옹호, 사법개선, 반전, 피압박민족 지원, 부락(部落)해방 등을 위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자유법조단의 결성(1921)에 중심적 역할을 한 것도 널리 알려진 그의 공헌이었다.

그는 어느 소요사건의 법정에서 장장 24시간을 변론한 기록도 남겼는가 하면, <법정에서 사회로>라는 개인잡지를 내기까지 했다.

그가 조선(인)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대단하다. 그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을 무력 진압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국에 동정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지어 메이지 법률학교 시절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논문을 썼다가 검사국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3.1 운동 당시에는 제일 조선인의 검거사건을 변호했고, 그후 의열단(義烈團)사건(1923), 전남 동양척식(拓植)회사 토지반환소송(1925), 조선공산당사건(1927)때는 서울에 와서 변호를 했다.

그가 변호한 이른바 박열(朴烈) 부부사건의 재판때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박열 부부는 처음엔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나중엔 대역죄로 기소되어(1925) 사형이 예상되는 판국에 후세 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나섰다. 법정에서 박열은,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일본과 맞설 각오를 하고 "천황의 이름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관과 조선 황제의 위엄을 갖추고 상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후세 변호사는 일본의 재판소측과 여러 모로 절충을 거듭한 끝에 박열은 마침내

조선 왕족의 예장(禮裝)을 갖추고 법정에 나갈 수 있었다. 그가 방청석을 향하자 방청객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고 당시의 신문은 보도했다.(박열 부부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일본 폐전후에 석방됨)

또 한 분 마시까 변호사는 기재(奇才)와 용기로 평판이 난 법조인이었다. 그는 당초 민사사건 변호사로서 재산도 모았으나, 태평양전쟁 중에 있었던 어느 고문치사사건(세칭 首なし事件)을 계기로 형사상의 원죄(冤罪)사건 변호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천황제를 부정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통렬히 비판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천황과 악마의 결합, 이것이 일본민족의 비극의 근원이다. 이 악의 힘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은 곧 악이며, 반대하는 것은 곧 선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중일전쟁 중 중국에 갔을 때에는 현지의 일본군 사령관을 만나 침략전쟁을 그만두고 귀국하라는 충고를 해서 큰 소동을 빚기도 하였고, 태평양 전쟁 중에는 미군의 공습을 피해 방공호 속에서 개인잡지(가까운 데서부터(近きより))를 등사하여 길거리에 뿌리는 등 반전(反戰)사상을 고취했다.

미다까(三鷹)사건이라는 의혹사건에 자유법조단의 일원으로 법정에 나선 그는 "나는 공산당을 반대하지만 훤 것을 겪다는 하는 데는 더욱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저 유명한 D.H. 로렌스의 <채털리부인의 연인> 번역판 사건(1950)에서 그는 번역자인 이도오 세이(伊藤整)라는 영문학자를 우정 변호하였는데, 그후 마루쇼(丸正)사건에서 마사끼 변호사가 명예훼손의 피고인이 되었을 때 이도오 교수는 그 사건 후원회의 회장이 되어 옛 우정에 보답한다.

마루쇼 사건은 마루쇼 운송점의 여주인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이득현이라는 한국인 트럭운전사가 구속된 데서 비롯되었다. 무죄를 호소하는 이득현씨를 위해 마사끼 변호사는 무료변호를 자청하여 혼신의 힘으로 변호를 한다. 마사끼 변호사는, 진범은 이득현씨가 아닌 피해자의 한 친척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변호인이 하루 아침에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1968년 봄, 도쿄의 법정에서 그분을 만나 한국인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한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본인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한 번 초청하겠다고 했더니 "나 혼자는 안갑니다. 육중의 이득현씨가 석방되면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뒤 이득현씨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서 서울에 왔다. 그가 석방되면 함께 오겠다던 마사끼 변호사는 그전에 이미 작고하셨으므로 이득현씨 혼자서였다.

일본의 진보적인 변호사 두 사람이 다같이 한국인을 위한 변호에 나선 것은 매우 음미할만 한 일이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일본 법조계 내에서도 아직 소수이거나 이단적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와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국경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분들의 남다른 실천적 정의에 국경과 국적을 가릴 것 없이 존경하는 마음을 지녔으면 한다. 일본의 재야법조계는 그런 선각적인 지사형(志士型) 변호사들에 의해서 바람직한 전통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특집 1

•
•
•

표현의 자유와 법

편집자주

이번 호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집을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대중 매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인 말그대로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밀접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를
중심 개념으로 하여 언론, 청소년보호법, 영화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관련법

장호준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언론학박사)

1. 머리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능하는 사회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주체가 다를 뿐이다. 독재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서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고 제한하기 때문이다.

195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Dennis v. United States* 사건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공산당간부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을 때 뉴욕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인 전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했다. 그러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반공의 회오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미국사회 전체로 번져갔다. 뺄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비판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다. 결국 강요된 침묵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돌아온

지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기 시작했다. 1957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얼 왠 대법원장은 거의 10년간 반공숙청의 회오리속에서 휘말려온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소수자와 반대자들의 정치활동이 우리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민주적 사상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소수의견들이 결국 다수에 의해 인정된 적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단순히 정설이 아니라거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처벌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소수, 반대 의견의 부재는 우리사회가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¹⁾

현대민주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다수의 횡포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다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소수의 권리다. 그들의 권리다. 소수의 의견을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1) *Sweezy v. New Hampshire*, 354 U.S. 234 (1957)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의견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용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올리버 웬델 홉스 연방대법관이 천명한대로 진정한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화의 노정에 있는 우리는 독재 권력자로 부터의 부당한 탄압과 아울러 다수의 전횡에 의한 소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재정비, 특히 과거 군사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관련법들이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 헌법은 양심과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사전검열 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정기간행물등록법, 방송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등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신장하기보다는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하고 균등히 누리도록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킨다는 구실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언론관련법의 주요 골격이기 때문이다.

10

이달의
민변
12월호

2. 표현의 자유의 철학적 배경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첫째는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아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바鲁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를 독재권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

하거나, 어떤 것은 거짓이므로 도태시켜야 한다거나, 어떤 이념에 따라 신을 숭배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통치권의 남용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자연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조차 없는 것"이고 "정부의 목적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에서 동물이나 꼭두각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계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한받지 않고 이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연권적 입장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천명한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 이후 법제화 되면서 *募鑑适逕聆시대를 열었다.*

두번째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체제를 꾸려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성을 갖고 토론하고, 자신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내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 미국의 철학자 알렉산더 마이클존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유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대리인들이 유권자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동시에 유권자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의 이론 즉, 개인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마이클존의 이론과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주권을 가진 이성적인 국민들이 언론의 비판적 영역을 이해하고 공공의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을 벌이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세번째 이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한 사상과 이념의 자유경쟁이 진리추구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개념은 영국의 작가 존 밀턴(John Milton)이 영국정부의 출판 검열조치에 반발하여 1644년 검열을 거부하며 불법으로 출판한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비롯되었다. 밀턴은 미풍양속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행해지던 영국 정부의 출판허가제를 신랄히 공격하면서 정부가 임명한 검열관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진실과 오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과 거짓이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결국 진실이 승리하기 마련이므로 정부의 언론통제는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스튜어트 밀(James Stuart Mill)도 사상의 자유경쟁 개념을 신봉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실이 꼭 오류에게 승리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오류라면서 밀턴의 이분법적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상의 자유경쟁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견의 표현을 막는 것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 뿐만 아니라 —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보다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특히 — 후세의 인류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의견이 옳은 것이라면 그들은 진실과 오류를 교환할 기회를 상실당하게 된다. 만약 그 의견이 틀렸다면 진실이 오류와 충돌함에 따라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인식과 생생한 감명을 얻을 귀한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²⁾

3. 표현의 자유의 제도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자들의 주장은 18세기 말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거나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 온 적은 없었다. 특히 소수의 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억압은 서구사회에서조차 사라지지 않았다. 자유와 박애를 천명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반대파를 무차별 숙청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프랑스에서 사전검열이 폐지되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출판기술이 도입된지 수세기만인,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끝난지 거의 100여년 만인 1881년 언론법이 통과된 후였다. 정부의 허가와 기탁금제도가 이때에서야 비로소 폐지되어 누구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신문에 대한 각종 세금과 기탁금제도가 사라진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미국사회에서도 미국인 다수가 질시하고 거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탄압이 주어졌다. 20세기 초반까지 인종차별 철폐주의자,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 생존권과 단결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불법선동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반공의 짓발을 높이 휘두르며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고 도전하는 자들을 거세게 탄압하였다. 비록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되었고 신생독립국인 제3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2) John Stuart Mill, *On Liberty* (Indianapolis: Liberal Arts Press, 1956), 36.

새로이 발전된 정보교류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시민들의 시도도 번번히 좌절당해 왔다. 이러한 규제에 상투적으로 도입된 논리는 국가 안보, 사회질서, 도덕윤리 수호등 이었다. 인쇄기가 발명되었을 때 각국의 왕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쓰여질 소지가 있다며 인쇄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19세기 중반 사진기술의 발달로 포르노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유럽의 귀족들은 그때까지 자기들만 즐기던 포르노가 하층계급까지 전달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영화가 발명되어 대중으로 인기를 얻자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위험한 것이라며 각국정부가 검열을 실시하였다.

정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 뿐만아니라 자본의 미디어 독점도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국가를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지배되어 왔으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발명되거나 도입될 때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선점, 장악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는 주로 정부권력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게되었다. 거대자본이 움직이는 매스미디어의 등장은 정부가 개인의 의사표현에 불간섭하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게 만들었다.

자본의 미디어 독점에 의한 시민 기본권의 제약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도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라디오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들에 의해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부터 광고를 통해 라디오 방송도 이익을 남길수 있음을 알게되면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정치적 입김을 발휘하여 연방정부의 라디오 위원회를 사실

상 장악하면서 주파수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들었다. 1934년 연방통신법이 제정될 당시 라디오 방송 소유주들은 당시 자신들이 소유한 라디오를 이용한 고도의 홍보전략을 통해 주파수의 시장지배를 법제화하였고 이후 미국에서는 유럽과 같은 공영방송체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점은 소수 기득권자들의 의사 표현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한국처럼 권력과 자본이 결탁되어 있는 나라에서의 언론은 권력의 친위대로 맹위를 떨쳐왔다.

법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매우 좁게 해석되어 왔다. 20세기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단지 사상과 이념의 자유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법학자 윌리암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은 1765년에 출판된 〈영국법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자유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출판을 사전에 규제 할 수 없음을 뜻 할 뿐이지 출판후 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유인은 대중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적절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법적인 것을 출판한 사람은 자신의 무모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³⁾

그러나 1919년 "사전억제" 뿐만아니라 과도한 "사후처벌"도 사상의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올리버 웬델 흄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의해 제기되었다. 흄스 대법관은 1919년 Abrams v. United States 사건의 반대의견문에서 미국법원의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을 도입하면

서 표현의 자유가 사전규제 뿐만아니라 사후처벌로 부터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흄스는 다수 민주주의사회라고 해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마음대로 묵살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의 의사표현이 "명백히 상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아닌 이상 정부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는 1937년에야 비로소 다른 어떤 기본권 보다 중요하다는 법적 "우월적地位"를 얻게 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수용하는 공통이념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기발전에 장애를 받고 사회적으로는 진리추구가 불가능해지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와해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우기 표현의 자유는 권리의 탄압만을 제거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하는 권리로 확대해석되었다. 1948년에 채택된 UN 인권 선언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인간은 누구나 표현과 의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남의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을 초월하여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든지 정보와 이념을 구하고 받고 나눌 수 있는 권리가 포함한다."

4. 한국의 언론관련법

1) 법적 변화 과정

우리나라에서도 제헌헌법 이후 많은 헌법개정이 있었고 일부 단서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강조하기도 하였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현재의 한국 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시켜

보호하고 있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 시켰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nisi하고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아직도 한낱 종이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1980년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사독재정부는 설정법이라는 허울속에 대다수 국민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강제된 언론통폐합 조치로 권력에 의해 선택된 인물들만 언론경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군사독재시절의 대표적인 악법인 언론기본법은 정기간행물의 등록(20조), 시설기준(21조), 언론인의 결격사유(16조), 편집인의 형사책임(53조), 언론기업의 겸영금지(12조) 등 갖가지 독소조항으로 사실상 언론의 민주적 기능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에 굴복한 군사독재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안되며" 언론에 대한 심판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이 내려야한다고 선언하면서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으로 독재권력이 퇴거하고, 그 영향으로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었지만 정부의 언론통제와 소수 기득권자들에 의한 언론 독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군사독재 당시 정부권력의 비호를 받는 소수의 언론기업에게 시장을 독과점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권력의 정당화와 이윤 추구에 몰두하게 만들었던 언론관련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1989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

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의한 정보보도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언론사는 언론사와 개인이 모두 균형되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선언하였다.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 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⁴⁾

그러나 1989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뿐만아니라 소수의 자본가만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고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거 법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권력과 가까이 있는 소수 세력이 언론을 독점,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관련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는 사전검열과 언론의 자본독점을 통한 미디어 집단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의 영화검열의 위헌 판정, 시사저널 기자에 대한 불구속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와 탄압에 대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긴 했으나 아직도 현행 언론관련법은 위헌적 요소들로 점철되어 있다.

4) 89헌마165.

2) 사전검열

1987년 12월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을 당시 한 언론법학자는 새로 만들어진 법이 "의당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참된 의미의 민주적인 언론보호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규제법적인 성격의 법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언론규제법인 언론기본법에 의해 제기되었던 법에 의한 언론통제의 문제가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턱"이라며 애석해 했다. 언론기본법의 근본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기간행물등록법과 방송법 뿐만아니라 1987년 이후 네차례나 개정된 공연법이나 과거의 영화법을 대체하기 위해 작년 말 새로이 제정된 영화진흥법, 역시 작년 말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등도 모두 일제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권위주의적 규제 위주의 골격을 아직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관련법상에 나타난 권위주의적 벌상은 해당 법의 명시된 목적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모두 "건전한 발전"이나 "공공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권리이 나서서 개인의 표현, 언론활동이 "건전"해 지도록 법을 통해 강요해야한다는 벌상 자체가 기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방송법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 그리고 "공공복지의 증진"을 입법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유선방송관리법 역시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 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종합유선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 천명하고 있다.

영화진흥법은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생활향상과 민족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그 목적대로 우리의 언론, 예술 문화가 건전함을 유지하고 민족문화가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언론관련 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언론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를 제약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건전한 육성-발전"과 "공공복지"를 강조하는 현행 언론관련법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의 한결같이 "심의"라는 이름으로 사전검열을 강요해왔다. 현재의 공연법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클래식 음악 공연 까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다. 물론 최근 헌법재판소의 영화검열 위헌판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검열 폐지 등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영화검열의 위헌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방송 및 컴퓨터통신의 사전검열은 계속되고 있다. 영화도 등급제 등을 통해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규제로 바뀔 뿐 그 내용상의 규제조치는 사실상 존속될 가능성이 크다.

사전심의를 강요하는 법들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막연한 심의대상을 열거하기만 할 뿐, 검열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다.

공연법은 공연윤리위원회로 하여금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2) 민족의 주체성 합양,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 등을 저해하는 공연물에 대해 공연

금지나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법도 영화 상영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심의를 거부하거나 삭제를 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방송법도 "방송은 특정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있으며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은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1)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합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 심의토록 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법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게 방송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결보기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명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 집단, 사상을 옹호하는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결국 방송법은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인 것이다.

컴퓨터 통신이 보급되면서 지금까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의사표현의 기회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이를 검열하겠다고 나섰다.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직되어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심의할 권한이 주어졌다. 인터넷의 유행이 채 번지기도 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홍등가 출입에 대한 소위 사회지도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고 반국가적인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좌의 비판 세력의 목소리들이 컴퓨터 통신망에서 제거되고 이를 올린 사람들은 처벌되고 있다.

공론을 비롯한 각종 심의기구의 사전검열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음란, 퇴폐적인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 체제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내용들이다. 더우기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가 부폐하고 불

합리하며,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적극 장려, 보장되어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사전검열의 폐해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언론문화에서 새로움이나 다양성, 진지한 대화나 격렬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대안 모색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언론관련법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건전한 문화발전이나 미풍양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존질서에 순응하고 다수의 구미에 맞춰 상업적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은 무리없이 통과하는 반면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내용들은 검열판의 가위에 잘려나간다. 가장 강압적인 검열행위가 이루어졌던 80년대 문화계를 취재했던 한 언론인은 당시 심의대상 영화의 90퍼센트가 가위질 당했고 외설, 폭력 장면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회비판이 담긴 장면은 여지없이 잘려나갔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뇌물을 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연윤리위원회 간부들은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라는 가사가 담겼다는 이유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라는 노래의 심의를 거부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걱정하였다고 한다.

3) 자본의 언론 독점

현행 언론관련법은 또한 자본의 언론독점을 조장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 시사저널 기자의 구속영장 취하를 두고 우리의 신문과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조치이고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재인식하는 계기라면서 크게 다루었다. 그러나 자본언론이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뿐이다.

지난해 5개의 지역 신문이 공보처로 부터 2개월간 정간당했을 때 우리의 자본언론은 논평은 커녕 보도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이거나 “사이비 기자” 제거라며 용호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정간당한 이유는 촌지를 받았거나 협박을 해서가 아니었다.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관해 보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 신문은 정기간행물 등록법 상 특수주간신문으로 분류되어 정치분야의 보도, 논평등을 할 수 없게 만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따르면 일반주간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해 보도할 수 있지만 특수주간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 한해서만 보도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당연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를 다루는 지역신문이 특수주간신문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부분 영세하여 일반주간신문의 법적 자격요건인 윤전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이 없는 지역 신문에게는 보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지역신문에 의존하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알권리가 제약받는 것이다.⁵⁾

비록 작년말 정간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지역신문들도 지역사회의 모든 면을 보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언론법은 표현의 자유의 균등한 향유 보다는 자격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유를 누릴 특혜를 주는 위헌적 요소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 언론이 자본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숫자로만 본다면 최근 한국 언론시장의

양적 팽창은 눈부시다. 언론탄압의 상징이었던 언론 기본법이 폐지된 1987년 당시에는 불과 28개였던 전국의 일간지가 93년에는 114개로 늘었고 그 발행부수도 800만에서 1200만부로 늘어났다. 텔레비전의 경우 민간 공중파 방송국이 새로이 허가된데 이어 유선방송이 개시되었다. 지난 여름부터는 위성방송까지 가세했다.

그러나 한국언론의 양적 증가가 언론의 자유의 보편화를 실현시킨 것은 아니다. 한 정치학자가 언급한 대로 한국의 언론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기득이익의 소리가 일반 여론의 모습을 띠고 국민전체의 소리로 국가의 일반이익인 듯이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언론기본법 시절 언론이 “국가에 대한 자율성과 비판기능을 상실하면서 점차로 기존의 정권과 협력적이었으며, 특히 자아준거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가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아직 그 체질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의 거대 자본언론은 “국가권력의 하급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시민사회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대기업과 사회최상층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막강한 힘과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⁵⁾

상업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매체는 다양성보다는 이윤추구에 몰두하여 다수의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나 의견만을 주로 전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다수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기존질서를 비판하고 도전하면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상업자본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사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대안 매체들에게도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구매욕을 중시하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 의견에 도전하는 작은 매체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더우기 최근 들어 방송, 영상, 컴퓨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매스 미디어의 대형화, 통합현상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대형 상업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헐리우드 영화와 서구의 위성방송체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영화든, 음반이든 영세한 소규모 업자가 신념을 갖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언론 시장환경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유제한, 반론권보장 등을 통해 언론 시장의 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관련법규는 사실상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언론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된 이유중의 하나는 현행 언론관련법이 사실 상업자본 소유자에게만 언론매체경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등록법의 경우 정부는 소수집단의 여론 독점 을 막는다는 구실로 소유, 경영제한 등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가 집단의 언론 시장독점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은 언론의 족별소유로 인한 여론의 독점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친족소유제한, 경영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언론기본법상의 시설기준 조항을 그대로 두어 사실상 자본가에 한하여만 일간신문 발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은 “타블로이드 2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은 “윤전기 1대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윤전기를 구입할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신문발행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5)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94년 겨울호, 40-64.

인쇄매체에 비해 많은 자본과 시설을 요구하는 방송매체는 애초부터 자본가와 정부권력에게만 소유가 허용되었다. 따라서 공공의 소유인 전파를 이용하는 매체로서 이행해야 할 공익성과 다양성 보장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작년부터 유선방송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채널영역을 임의로 구별, 배분하였으나 대안매체나 시민단체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익 접근채널(Public Access Channel) 같은 것은 아예 모색조차 되지 않았다. 영화나 음반제작의 경우에도 재산상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영화진흥법의 경우 35mm 이상의 극 영화제작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일정금액(극영화 2억원, 기타 1천만원, 외국영화수입 10억원 이하)을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음실, 녹화실, 제작실 등의 시설을 갖춘 사람에게만 한하여 음반이나 비디오물 제작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의 언론관련 법규는 능력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론의 자유시장에 뛰어들어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할 기회를 주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철저히 시장입구에서 국가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국가권력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특혜로 바뀐 것이다.

5. 맷음말

현행 언론관련법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은 언론의 자유를 함부로 누릴 수 없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이다. 공공윤리, 사회질서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자의적인 사전검열을 실시 기준질서를 비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만이 사실상 매스 미디어를 소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대다수 국민들은 권리와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한 사회의 성숙함의 정도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어떻게 전달되고 수용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중심의 사회일 수록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자기표현은 소외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며, 그들간의 대화는 한 사회가 정체, 붕괴되지 않고 변화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성숙된 민주 사회인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힘있는 자, 돈있는 자, 인기있는 자들 만이 자유롭게 의사표현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권리와 재력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사표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즉 국민 누구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현행 언론관련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 언론관련법이 헌법상에 명시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전 검열 장치가 제거되어야 하고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 언론의 자유의 특혜를 부여하는 관련조항도 개정되어 정부는 언론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끝)

표현의 자유와 매체물에 대한 규제

- "청소년 보호법안" 검토 -

이 형근

(편집자주)

이 자료는 이번 특집의 주제인 '매체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의 일례로서의 '청소년보호법안'에 나타난 매체규제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안'에 나타나 있는 매체물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매체에 대한 규제'라는 길등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언론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안'을 만들어 청원할 예정입니다.

1. 들어가는 말

신한국당은 최근 박종웅 의원이 발의한 가칭 "청소년 보호법안(이하 '본 법안')"을 국회 문공위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시킬 예정으로 있다. 본 법안은 청소년을 음란, 잔인한 매체물 등 모든 종류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와 국민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창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발의되었고, 그 입법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인지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은 평소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의 개입을 요구해 온 몇몇 시민단체들

과 우리 사회의 일부 도덕론자들,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지상목표로 여기고 있는 중산층 기성세대들로부터는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본 법안을 재독, 삼독할수록 본 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하여 대단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을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검열의 주관을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기관의 전권에 맡기고자 하는 것인 바, 본 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대상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따라서 본 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의 과정없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언론, 출판의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의 정도 또한 그만큼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이 현재까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어 있지도 못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지도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본 법안이 내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급박한 정치적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여지고, 더불어 본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의 표명이 자칫 본 법안이 내세우는 대의명분 자체에 대한 반대로까지 비치게 될 것에 대한 기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성 문화나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선적 이중의식 또한 본 법안에 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에 대하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목적이나 명분의 정당성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그 침해되는 권리와의 비교형량에 대한 아무런 진지한 검토 없이 입법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침해의 대상이 의사표현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와 같이 자유민주사회에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경우에는 그 입법의 조심성이나 섬세함에 대한 요청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본 법안이 그 발의의 과정과 법안 내용의 양 측면에 있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 우선 우리는 본 법안이 특별히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매체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라는 입안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본 법안의 실질적인 규율 대상이 매체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나.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에 본 법안은 매체물과 약물, 그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역이나 영업소 등

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매체물 외에 약물이나 업소에 대한 규제 부분이 본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그리고, 그나마 약물이나 업소에 대한 규제 부분은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의무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종전까지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던 바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규제를 위해서라면 굳이 위와 같은 법안을 다시 만들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또한, 본 법안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1차 성안되었던 지난 9월 당시만 해도 본 법안의 명칭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던 것을 보면 당초 본 법안의 입안 의도가 매체물의 규제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 그런데, 지난 10. 4.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현재의 결정을 기폭제로 하여 사회 전반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자, 본 법안이 당초 목표하였던 매체물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반대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안의 명칭에서도 "매체물규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법안 내용에 매체물 외에 약물이나 업소에 대한 3개의 조항을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위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3개 조항과 만화 등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법안은 매체물규제만을 목표로 했던 1차 법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 결국, 본 법안의 내용과 본 법안이 청소년보호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본 법안이 실질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매체물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따라서 본 법안의 적절성

여부는 무엇보다도 의사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 문제에 그 중점이 놓여있는 것이다. 반면, 본 법안 내용 중 약물이나 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그 부분들의 내용은 있어도 그 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말하자면 없다고 하여도 종전 까지 적용되어왔던 다른 법률들이 있는 것이고, 그에 더하여 다시 본 법안 내용과 같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현을 표명할 만큼의 심각성은 없는 내용인 것이다. 이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매체물에 대한 규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입법근거의 정당성 검토

가. 본 법안의 입법근거

우선, 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본 법안의 입법을 위한 근거가 그 자체로서 명확한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법안의 입법취지를 간명하게 말하자면,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안이 적절하고 유효한 입법안이 되기 위하여는 (i) 청소년 비행과 유해한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ii)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특별히 매체물을 규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즉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매체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 법안은 기본적으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외에 다른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제외하고 매체물에 대하여만 특별히 규제를 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본 법안의 입법에 대한 형평성과 정당성은 의문스러운 것이다 때문이다.

나. 청소년 문제와 매체물과의 연관성

그런데, 첫 번째 전제에 대하여는 본 법안을 발의한 쪽이나 그에 찬동하는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서 그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는 "당연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그 인과관계의 문제가 다분히 행동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명백한 해답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의 문제가 심리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된 이론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완전히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주로 미국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같이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선정적이고 대중적인 기반 위에 존속하는 국가, 그리고 극도의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사회 성원간의 정서적 공동의식이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절되어 있는 사회의 연구결과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인과관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동기라는 내심의 작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은 완전히 수용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는 결국 '추정적인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법안 내용대로 매체물이 규제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비행이 감소할지, 또는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매체물 규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측정불가능한

추정적 가능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된다. 그에 반하여 추정적인 가능성에 바탕한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현실적인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본 법안이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매체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위와 같이 가능성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본 법안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는 본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청소년 보호"라는 이익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의 충돌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할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와의 비교형량의 문제인 것이다.

다. 매체물에 대한 특별 규제의 타당성

다음으로, 일단 청소년 비행과 매체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체로 본 법안과 같은 입법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매체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그래서 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남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한 근거의 제시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청소년 비행의 원인들 중에서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음란, 폭력적인 유해매체물보다는 오히려 입시위주의 반교육적인 학교체계, 빈부격차로 인한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절대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 자체의 박탈과 생활의 불안정 등일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까지 서게되는 청소년들의 변론을 맡는 우리 변호사들의 현장 경험으로서는 청소년들이 범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부재와 생활의 빈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유해한 매체물에 영향을 받아 비행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신문에 날 정도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모범생들임에도 비행청소년이 되었으므로 대단히 문제라는 해설 기사와 함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균원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아니 그보다 아예 그 교육체계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주범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얹혀 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도 힘들므로 정부, 여당의 청소년 보호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본 법안과 같은 매체물의 규제를 입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 입법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

우리는 본 법안의 논리적인 전제가 되는 위 두 가지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면, 본 법안은 그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른 모든 입법에 있어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새로운 입법의 결과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일반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침해적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이 규제하겠다고 하는 유해매체물 만큼이나

선정적인 태도이다. 국민의 감정은 물론 모든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취지를 가진 법률이라도 국민 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은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 소극적 판단기준이지, 다른 근거의 제시없이 국민이 원하면 모두 입법을 한다는 적극적 판단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근거의 부재를 국민 일반의 동의라는 이름을 빌어 정당화하기 쉬운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법근거의 제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 본 법안의 기본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법안의 기본 구조

본 법안의 가장 특징적인 기본구조는 두 가지 점에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매체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창작을 제한하지는 않겠으나, 그 유통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둘으로써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유해한 매체물인가의 판단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심의기관(아래에서 살펴보듯 각 심의기관의 성격은 결국 행정기관이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본 법안의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볼 것인 바, 그 논의는 결국 본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근본 발상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나. 유통 제한의 타당성

(1) 우선, 본 법안이 창작이나 의사표현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후심의를 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전심의를 유도하여 겸열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겠지만(사후에라도 언제든지 심의대상이 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체물 전부를 수거하여 다시 표시의무나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체물 전부가 폐기될 수도 있는 경우, 출판업자 등 당해 매체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진하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범위논리적인 측면에서 겸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점에서는 최근의 영화법에 대한 현재 결정이 본 법안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여하튼 종전까지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통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발상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본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본 법안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미국을 위시한 선진 제국에서도 음란물 등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진열 등도 분리하여 유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본 법안이 규정하는 유통 제한 방식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본 법안의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비교법적인 근거는 적어도 본 법안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인 음란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체계와 사회체제가 상이한 외국의 예에 대한 상당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 즉, 원칙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제국의 경우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상영, 배포,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까지 음란물에 무조건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통(음란물도 창작과 표현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란물이 아닌 것 중에서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유통이 제한될 정도의 음란물은 아니지만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다한 매체물의 경우 그것을 청소년이 구입하여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의 판단이나 부모들의 교육, 다시 말해 그 사회의 문화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음란물"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제작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유통하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유통 제한의 내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성학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음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체물의 유통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통이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의 경우는 그것을 청소년이 보는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물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는 다시 사회문화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나 이는 법률적인 강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 중에서 다시 그 내용의 등급을 나누어 다소 성적인 표현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어떠한 매체물이 합법적인 것이나 혹은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자체의 판단에 대하여도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것이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본 법안은 합법적인, 말하자면 우리 기준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 중에서도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대부분일 것이다(물론,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한다는 것과 실제로 유통되지 못한다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많은 기성세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집행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유통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유통된다는 것과 본 법안을 입법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동일시하여 외국의 예를 들어 본 법안의 유통 제한 시도를 정당화하기는 힘든 것이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외국의 유통제한 예와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유통 제한의 내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성학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음란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체물의 유통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통이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의 경우는 그것을 청소년이 보는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물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는 다시 사회문화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나 이는 법률적인 강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본 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란하지 않은 매체물 중에서 다시 그 내용의 등급을 나누어 다소 성적인 표현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고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어떠한 매체물이 합법적인 것이나 혹은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자체의 판단에 대하여도 대단히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것이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본 법안은 합법적인, 말하자면 우리 기준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 중에서도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나누어 후자의 유통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그 판단기준이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성적인 표현이 다소 과다하지만 음란물로까지는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다소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음란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가 또는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공익적 가치가 보다 더 우월한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매체물에까지 접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청소년의 경우는 예술성이나 기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성인보다 열등하고 또한 성적 표현에 대한 반응이 보다 더 물이성적이라는 전제를 의제하여야 하는데, 과연 청소년의 인격과 정서발달 정도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의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기성세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 충동에 악하고 정신연령이 미숙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실제로, 본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표하는 일부 논자들 중에는 본 법안의 적용대상을 20 세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편견 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다. 충동에 악하다 아니다의 문제는 오늘날 대중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청소년이거나 아니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문화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영상, 활자 매체를 보고, 듣고, 읽으면서 성장하고 그 의견이나 정서적 성숙의 정도에 있어서는 성인들과 구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런데도 법이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어 일정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다만 불가피하게 의제할 뿐이다.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는 행위능력이나 선거연령 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정서적 성숙의

문제에 대하여 무리하게 법률적인 의제를 하여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매체물의 내용까지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그 매체물은 음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5) 음란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물론 유통 제한의 방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음란한 매체물이 아닌 경우에까지, 그 내용이 보수성향의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도 다소 성적인 표현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률로 강제하여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제한이 아닌 유통 제한의 방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창작과 의사표현의 의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창작과 의사표현에까지 법이 개입하여 그것을 볼 수 있는 연령과 방식을 강제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권력의 행사가 되기 쉽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에 접하는 것이 교육적인가 아닌가 하는 따위의 문제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이 개입하여 강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판단은 섬세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청소년 개개인의 개성과 환경과 부모들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그 대응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그 속성상 몰개성적이고, 획일적이며 교조적이다. 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아니되며,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문화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문화의 내용을 문제삼는 법률이 그 입법의 의도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낳은 경험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경험은 결국 입법의 내용이 적극적인 장려책이 아닌 이상, 혹은 입법의 규제 대상이 사회전반의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의 저질스러운 매체물이 아닌 이상, 문화적 사안으로 법이 개입하기에 적당한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법안의 검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점들이 충분히 음미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 본 법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태도는 올바른 입법의 태도가 아니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창설과 실질적인 검열의 문제

(1) 본 법안의 두 번 째로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여 그 기구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들은 고위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인정받는 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짐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기관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일정한 유통제한 의무를 부과하며 그에 위반하는 경우 매체물의 수거, 폐기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2) 물론, 형식적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검열기구라 할 수 없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유통제한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

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4. 10. 4. 93헌 가13, 91헌바10 결정), 본 법안의 경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의사표현의 내용을 심사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의무도 없고 사전에 의사표현의 발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검열을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모든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게 되고, 그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표시, 포장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그 경우 각 매체물의 발행자들은 유통 중인 매체물들을 모두 수거하여 다시 표시,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강제로 수거, 폐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출판사를 비롯한 각 매체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기를 원할 것임은 자명하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을 시켰다가 추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 되는 경우는 매체물을 모두 수거하여 표시, 포장 의무 등을 다시 이행한 후 제한적으로 유통하여야 하는데, 각 매체물의 사업자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감수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실제로 그 동안의 만화 등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전검열에 대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본 법안에 의하여 법제화되도록 되어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그 동안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는(간행물에 대한 심의권한을 법률로 부여받은 바 없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임의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

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수십년 동안 만화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해 왔다. 그리고, 각 만화대여점에 보급되는 만화에 사전심의필이라는 확인을 받도록 했고, 만약 그러한 사전심의필을 받지 않고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나 공보처, 일선 구청, 경찰 등 각 행정기관에의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즉, 경찰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필이 없는 만화를 미성년자보호법,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불량만화로 보고 이를 수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당해 만화 대본업 소나 만화 출판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위협을 공공연히 빙았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모든 대본소용 만화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만화를 삭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그것은 곧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권이 사전에 의사표현의 내용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검열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조직이 위와 같이 실질적인 검열의 권한을 수십년간 행사해왔는데, 본 법안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이 창설되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제화되어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모든 매체물은 전면적인 검열의 위험, 더군다나 법률적으로는 검열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열이 되는 보다 더 심각하고 대항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4) 본 법안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검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본 법안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검열의 결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현재의 결정이 가장 강력

한 대응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법안은 현재가 정의한 검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헌적인 정당한 법률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위 현재 결정의 취지는 형식적인, 즉 법률적인 의미에서 검열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형식적인 검열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국가가 의사표현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결정의 요체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조차 검열에 해당되는 법률은 유효할 수 없음이 당연하며,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검열에 해당하는 법률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되는 내용이므로 법익교량의 과정을 통하여 신중히 입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권에 속함이 분명한 청소년 보호위원회, 그리고 공연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이미 공연윤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속한다는 현재의 판단이 있었는 바,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방송 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에 해당함은 물론이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실질적으로 발표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본 법안은 그 입법의 과정이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5. 구체적 법안 조항의 검토

우리의 기본적인 견해는 본 법안의 기본적인 구조 및 입법 과정 그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 법안은 전면 폐기되거나 최소한 보다 신중하고 공론화된 검토를 위하여 전면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상에서는 주로 본 법안의 입법 근거와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 조항들 자체로도 그대로 입법화되기

에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바,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가. 기본 용어상의 문제(제 2 조)

(1)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매체물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정의하고, 또한 풍속 영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본 법안 제 2 조 제 3, 4 호 : 이하에서 특별히 법령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본 법안의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용어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우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라고 심의,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그 판단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몇 명의 심의위원(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심의기관 내부의 실무담당 공무원의 판단일 것이다)이 정한다고 하는 것인 바, 청소년의 대표도 아니고 학부모의 대표도 아니고 교육자의 대표도 아닌 그 몇 명의 심의위원이 우리 사회의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내용에 따라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법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일 뿐 아니라 그 실질적인 판단의 내용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본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각 심의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매체물이 일용 성인에게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일 뿐이다. 그런데, 일

견 성인들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하여 곧 바로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의 성인용 매체물이 모두 반사회적인 음란, 폭력물이라는 전제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본 법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현한 용어는 "성인용매체물"이라는 용어 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풍속영업소, 비디오감상실 등을 그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위 (2) 항과 똑같은 이유로 비논리적이고 몰상식한 용어이다. 비디오감상실은 말 그대로 비디오감상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일정 시설에 대한 심사를 받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 7 조), 그러한 영업소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디오감상실이 비교육적인 장소가 된다고 하는 논리는 청소년들이 비디오감상실에서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지역이 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학교 주변의 뒷골목, 모든 학교의 화장실 또한 청소년유해지역으로 법정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비디오감상실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시설의 사전 심사를 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행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비디오감상실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선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 주변에 폭력배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도로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을 건전하게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 도로지역을 청소년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 가지 이치인 것이다. 당초에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 만능에 대한 중독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본 법안은 풍속영업소를 일률적으로 유해업소로 단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위 풍속영업소에는 소극장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노래연습장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동 법 제 2 조, 동 시행령 제 2 조). 그렇다면, 영화를 상영하는 소규모 극장과 비디오를 대여하고 만화를 대여하는 업소들은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한 법적 용어가 부당한 동시에 극히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용어는 "성인출입업소" 및 "청소년출입제한업소" 등으로 대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릇 모든 법률은 말을 만들고 그 말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법률 속에 사용되는 용어는 정확해야 하며 그 용어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입법은 심한 경우 '모호하므로 무효'일 수도 있고,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졸렬하고 부적절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기본 용어에 있어서의 문제는 본 법안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게 성안되었는지, 얼마나 졸속으로 입안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어 주는 징표가 되는 동시에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영상산업, 만화산업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이해

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틈나는 대로 영상산업과 만화산업의 부가가치를 강조하며 그에 대한 장미빛 육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본 법안의 기초적인 태도는 비디오나 영화, 만화 등의 매체를 대여하거나 상영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바, 그러한 인식의 출발점조차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산업이나 만화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법안이 사용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용어들은 반드시 대체, 수정되어야 한다.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 6 조)

(1) 본조 제 1 항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도로 규제 조치가 있다면 그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본조의 규정 내용은 대단히 애매하다.

(2) 단적으로, 본 법안 제 25 조 제 2 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풍속영업소 중 청소년이 출입 할 수 없는 업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고, 그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위 본 법안 제 6 조와 제 25 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의 해석상 풍속영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로 된다.

얼핏 보기에는 본 법안 제 6 조에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까지처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6 조는 분명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를 때에 비디오대여점이나 만화대여점을 비롯한 풍속영업소에는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제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 바, 청소년출입제한이라는 규제방법은 이미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결국 현재의 법안 내용에 충실히 따른다면 풍속영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3) 본 법안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적용상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결국 본 법안이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매체물 규제 외에 무리하게 영업소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시키면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포괄적 입법임을 표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 법안이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물이나 영업소 등에 대한 내용을 무리하게 규정할 이유가 있는지가 우선 의심스럽고, 만약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다른 기준 법률과의 관계와 서로간의 적용 범위를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제 28 조 내지 제 34 조)

(1) 본 법안은 제 4 장으로 독립된 장을 두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 마디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 사무관장의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위원들의 신분은 고위직급의 공무원으로 보장받는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다. 사실상 법안 제 29 조에서 열거한 다른 모든 사무관장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안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권한만으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들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 30 조 : 이전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서는 공연윤리위원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종합 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장, 간행물윤리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총 위원 중 최소한 8인 이상의 위원이 위와 같은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법정되었다). 본 법안 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매체물 전반에 대한 1차적인 음란성, 폭력성, 사회성의 심사를 행정권이 독점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위원회의 사무가 단순히 기술적인 행정적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구성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전권 하에 두는 것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업무는 단순한 행정적 사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는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인 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의 구성을 행정부의 전권에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위원회의 업무의 성격은 각계각층의 국민의 평균적 의사를 모두 집

결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그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거나 또는 국회에서 위촉한 추천인단이 추천한 각계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어차피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위와 같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전권으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한 정당이 반수 이상의 위원이나 추천인단을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심의기준 등 심의 절차와 관련된 조항

(제 14, 11, 22, 24, 40 조 등)

(1) 제 10 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제 1 항 제 4 호 내지 제 6 호는 음란, 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상당한 악용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즉, 위 4 내지 6 호의 경우 건전한 인격과 자유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비판적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극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시절 공유를 비롯한 각 심의기관들이 이미 실증적으로 보여 준 바 있는 것이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과거의 공유보다 더 경직적인 기준을 적용할 위험 조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 경우, 건전한 비판의식의 함양이라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교육의 목표가 회생되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심의기준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

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법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모두 입법화할 수는 없겠으나, 예컨대 음란성 기준의 경우 최소한 "예술적, 학문적 기타 공익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의 성기나 성교 장면, 수간, 강간, 집단 성교, 근친상간 장면 등을 묘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비정상적이고 음란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력성 기준의 경우에도 무기 사용이나 잔인성의 정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제 4 조 내지 제 6 조는 삭제하거나 불가피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도 악용의 가능성성이 큰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제 11 조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종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을 작성하여 각 심의기관에 통보하고, 각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매체물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법안의 경우 그 각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각 매체물은 그 매체물 고유의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그에 따라 선진의국에서도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에는 확연히 다른 외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종 매체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의기준이란 결국 표현의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각 매체물에 담긴 사상과 의견이라는 내용적인 측면이 주종을 이를 것

임은 분명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매체물의 경우는 그 매체물의 형식 여부를 떠나 일률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본 법안이 당초 그 입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폭력, 음란물의 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정권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무엇보다 크다.

공통심의기준의 필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본 법안 제 21, 22 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 사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매체물의 목록을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각 심의기관의 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 그 인적 구성의 동일성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큰 것이므로 사실상 각 심의기관 사이의 심의내용 조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제 30 조 제 4 항 참조). 반면, 그러한 서로간의 정보 교환을 통하여서도 조율될 수 없는 것은 각 매체물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본조에서처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다시 준강제적으로(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심의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제 22 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고시 자체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보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표가 됨으로써 당해 매체물이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당해 매체물 사업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본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해매체물의 여부는 사후에 심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

회에서 유통되는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동시에 심의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과 심의를 받은 매체물 사이에, 또한 시간적으로 일찍 심의 대상이 된 매체물과 늦게 심의 대상이 된 매체물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고시되는 지의 여부와 그 고시 기간 등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그러한 불공평한 현실적 효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유해매체물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는 분명하지 않다. 이미 각 심의기관이나 행정기관 사이에서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이고, 당해 매체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당해 매체물의 표시, 포장을 통하여 당해 매체물의 심의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체물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에 비하여 특별히 고시를 하여야 할 행정적, 공익적 필요성도 명백하지 않은 것이라면 매체물의 고시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제 24 조는 누구든지 유해매체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신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구태여 법정화하고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두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유해매체물 신고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간첩 잡는 일도 아닌데 구태여 이와 같은 조항까지 두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제 40 조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는 제 38 조의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확인 행위적 성격을 가진 유해매체물 결정, 확인 등도 당연히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결과 자체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양자를 모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것이 아니고 각 심의기관이 심의,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신청 포함 여부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간행물윤리위원회(제 45 조)

(1) 본 법안은 그 동안 법적 권한 없이 만화와 소설 등 간행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심의권한을 행사해온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만화, 사진첩, 화보, 소설 등의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간행물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이 심의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의 각 매체물들에 대한 심의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2) 그러나,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구를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또다시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법정화하여 국고 보조까지 하는 등 비생산적인 심의기관을 비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스럽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만화, 소설 등과 같은 매체물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매체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 바, 그러한 매체물들에 대한 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차피 각 매체물 중에서 따로이 심의기구가

있는 매체물은 그 심의기구에서 기본적인 심의를 할 것이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외에 위의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매체물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면서 전체 매체물의 심의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배분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3) 만약,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간행물들의 심의를 맡기게 된다면, 한달에도 수천종 이상씩 발행되는 간행물의 적정한 심의를 위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방대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외에 또다시 그와 같은 심의기구를 새로이 법적 조직화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기구의 확대이고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반대로 현재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본 법안에 따른 심의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도 적정한 간행물의 심의를 포기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므로 본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인 행정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간행물에 대한 심의권한을 행사해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차제에 해산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체육부나 기타 행정기관 또한 아무런 근거없는 임의단체의 판단에 공권력의 힘을 실어주어 왔던 부당한 판행은 마땅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마치는 말

가. 지난 1996. 10. 4. 현법재판소는 가히 우리나라의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혁명적이라 평가하여도 좋을 만한 결정을 내렸다. 그와 같은 현재 결정을 기폭제로 하여 우리 사회는 뒤늦게나마 민주사회에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에 대하여 새삼 숙고하여 볼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비단 현재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영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 전반에 대하여 그 내용과 한계, 사회적 책임과 자율적인 자제의 문제, 창의성과 공익성의 조율의 문제 등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과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바야흐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율적인 원칙을 확립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와 같은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민주적 진보를 이룩해 내었고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자유로운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갈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언제나 일반대중의 수준을 문제삼으며 타율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국가권력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이었던가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신한국당에 의하여 국회 문공위에 제출된 본 법안은 위와 같은 우리 사회의 자율적인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또다시 행정권에 의한 모든 매체 물의 통제를 그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물론, 본 법안은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는 경우 초래하게 될 결과는 사실상 검열의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하필이면 이 시기에, 언론과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이제 막 확립해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본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너무나도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서 한시도 그 입법을 늦출 수가 없다고 하는 본 법안이 그 동안 몇몇 사람을 모아 놓고 문

화체육부가 주최한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론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침통하게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본 법안은 우리 사회가 누리게 될, 혹은 누리고자 하는 의사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아무런 원칙없이 무분별한 무질서로 치달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회이므로, 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하여 주어야 하고 또한 그 판단 내용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전제로 한다. 나이가, 본 법안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해한 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사회는 아무런 자율적인 원칙을 세울 역량을 가지지 못한 사회인가. 반드시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하여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인가.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의 곤궁함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제쳐두고, 학교가 대입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여 소수의 학생들만을 끌어았고 다수의 학생들은 방기한 채 과행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를 방치해 두고, 전 국토가 향락업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서 행정권이 매체물만을 규제하면 청소년 비행은 없어지는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보없이 본 법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본 법안의 논리적 전제들에 대하여 동의할 수가 없다.

라. 청소년 문제 해결의 본질은 건전한 교육과 풍요로운 환경을 여하히 만들어 주느냐에 있는 것인지, 매체물을 규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참다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받

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불건전한 문화가 넘쳐흐르고 있다면 특정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는 매체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그것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본 법안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중대함에 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유만으로도 전면적으로 폐기되거나 보류되어야 할 법안이다. 또한, 현재 결정 이후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자율적 의사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실질적인 검열의 효과를 목표한다는 점에

서도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다. 나이가, 본 법안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 우리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발전에 어떠한 역기능을 할지도 모르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법률인 바, 그러한 위험성을 포함한 채 그대로 입법되어서는 아니된다. 무엇보다도 본 법안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호도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차단시킨 채, 매체물들만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적, 절차적 선행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본 법안의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는 보다 전향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원인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영화제

이 글은 매체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와 관련된 글의 하나로서 한국사회 내에서 영화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주게 하는 계기가 된 '인권영화제'에 관하여 사랑방 측에서 모니터한 글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인권운동사랑방이 중심이 되어 96년 11월에 개최하였던 '인권영화제'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운이 남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과 함께 인권영화제를 감상한 후 소감을 담은 감상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덜 익었지만 향긋한 감동으로 달궈진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류 은 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제1회 인권영화제 준비사무국)

지난 11월 2일에서 8일까지 서울에서는 우리나라 예선 처음 있는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숨이 턱까지 받치는 높은 언덕위에 자리잡은 상영장에, 깜깜해서 안내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찾아든 관객들의 줄은 끝이 없었다. 매회 700여 좌석을 꽉꽉 채우고, 계단과 바닥에까지 자리잡은 관객들의 열의와 집중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당국의 압력으로 인한 행사의 축소, 상영장소의 열악함, 추위, 소음에 가까운 음향, 엉성한 진행, 어느것 하나도 그런 열의와 집중을 받아낼만한 그릇이 못되었지만, '제1회 인권영화제'의 관객들은 무던함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자랑으로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감동을 만들어준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1회 인권영화제'의 자취를 더듬어보려 한다.

1. 왜 인권영화제를?

'왜 인권영화제를 열었느냐? 왜 '처음'이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인권과 영화의 연결고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권영화제에서 다른 성격의 영화들을 대학가 등의 영화집단들이 소규모로 다뤄온 일도 많지 않았느냐는데서 나오는 질문이었다.

먼저 내놓을 대답은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영화제를 제안하고 주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교육'을 그 주요사명으로 알고 있는 인권단체로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며, 강제된 무지는 인권침해의 한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인권에 대한 자료나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권 교육은 발불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인권을 주제로 한 효과적인 만남과 인권교육의 매체를 찾아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화'란 가장 친숙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실이자 교재였다.

또하나, 인권의 나필수가 되어 왔다고 생각한 인권전문신문 '인권하루소식'이 세 살을 먹게 되면서 뜻깊은 생일잔치를 마련하고픈 소망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당돌하게도 '인권영화제'였던 것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1번 극장에 발돌릴 일도 없고, 불꺼진 후 5분도 못돼 잠이 드는 인권운동가들이 감히 '영화제'라는 생각을 하게 될만큼 '영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은 '언어'였던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영화제인가?

우리의 작업은 단순히 인권을 주제로한 영화를 모아 틴다는데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제의 뚜껑을 열면서, 우리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꽁꽁 묶여있는 또 하나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전향제도, 제3자 개입금지 만이 아니라 '영화제작자의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처벌',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작자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처벌' 등은 가진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감히 선언하며, '사전심의'의 그물을 빙틈없이 펼쳐놓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권의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선택은 사전심의 거부인 것이 당연했다. 겸열의 문을 닫고 자유로 시작하는 영화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자는 다짐속에 인권운동가와 영화인들이 어깨를 걸게 되었다. 영화제 성사여부 자체를 불투명하게 할 사전심의 거부 선택 그 자체가 인권영화제의 신호탄이었다. 또한, 상업주의의 '빈인권'에 맞설 영화들을 찾아서 '무료'로 상영한다는 것도 큰 모험이었다. 불법영화제에 스폰서가 있을리 만무하고, 독립영화를 찍는 영화인들과 의지만이 강할뿐인 인권운동가의 빈주머니로 벌이는 무료행사였으니 말이다. 이런 도전과 모험으로 뭉쳐서 우리는 감히 '제1회 인권영화제'의 결음을 딛기 시작했다.

2. 불안속에 밀려드는 일

'제1회 인권영화제'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관심과 기대가 몰려왔다. 하루종일 쉴새없이 걸려오는 문의전화로 낮에는 업무마비 현상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드러내놓고 홍보를 할 수 없는 속앓이를 해야 했다. 상영장소를 얻지 못했으니, '장소미정'으로 나가는 홍보는 서울 김서방네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한총련사건으로 모든 대학의 문은 닫혔고, 제1회 인권영화제를 유치하겠다고 먼저 나섰던 극장측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말에 고개를 돌렸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장소를 얻지 못한 불안 속에서 작품설외, 번역·자막작업, 홍보를 제작, 재정마련, 초청인사설외, 부대행사마련 등 할 일은 해야만 했다. 정말 겁없이 일을 벌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영화라는 매체는 많은 일들을 필요로 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사전심의 거부로 인권영화제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방폐막도 쟁어야 했다.

가장 큰 준비는 작품마련인 것이 당연했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으로, 인권의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구호만이 앞서지 않는 감동적인 작품,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을 고른다는 우리 기준을 민족시끼기 어려운 만큼이나 제작자에게 상영허가를 얻어내는 일이 큰 산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뉴욕에서 열어온 인권영화제의 출품작들을 빼어내고, '앰네스티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이 소장한 3천여개 필름목록을 훑어냈다. 빌벗고 나서서 유수한 독립영화제작소를 연결해준 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만나게된 작품들을 놓고선 밤마다 팩스와의 전쟁을

별였다. 인권영화제의 입장에 동의한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우리의 어설픈 편지에도 작품을 무상으로 내주었지만, 연락이 닿지 못해 애태운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제작자의 휴가지로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취하며, 이번 영화제에 꼭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에 대한 설의는 영화제 막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상영전날에야 제작자의 허락이 내리고, 필름이 도착하는 작품도 있었다. 살얼음을 딛는 듯했으나, 하나하나 작품들을 얻어낼 때마다 보화를 얻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 인간의 삶이 주는 감동은 얼마나 큰것인가? 104년의 인생을 겸연과 왜곡된 언론과 맞서 싸운 언론인 죄지셀더스의 삶을 보여준 〈진실을 밀하고 뛰어라〉, 동성애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 끝에서 암살당한 샌프란시스코 시정감시관 하비밀크의 생을 그린 〈하비밀크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평화는 언제 올것인가? 묻혀진 섬, 이스트리모르의 실상을 알게해준 〈한 민족의 죽음〉, 세계의 화약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의 생활을 보여준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전쟁과 여성, 강간과 죽음보다 더 한 현실을 드러낸 〈악마의 자식들〉과 〈하늘〉, 강간이라는 같은 경험을 묘사하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고문자들을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하는 승화의 과정을 그린 〈유령을 부르며〉에 숨을 죽였다.

다시 일어서는 일은 힘들지만 아름답기만 하다.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누이의 이야기, 기지촌 여성의 삶을 그린 〈이방의 여인들〉, 전사에서 독재권력의 하수인으로 변신하나, 다시 진실로 돌아가는 여성의 고백 〈배신의 시간속에서〉, 경찰폭력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사회의식에 눈뜬 활동으로 바꾸어내는 어머니의 이야기 〈변화의 초상〉, 비인간적인 혼련을 통해 만들어진 고문기술자의 폭로 〈당신의 이웃집 아들-고문가 만들

기〉의 자기와의 싸움은 치열하다.

편견과 차별의 무게는 자유와 평등의 무게를 얼마나 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미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살인사건의 진상 〈누가 빈센트친을 죽였는가?〉, LA 사태뒤에 숨어있는 경찰폭력 〈비상사태, LA경찰의 내막〉, 흑인들이 말하는 LA사태 〈한 국가의 탄생〉, 죽음의 춤을 추는 선주민의 처절한 삶 〈지하의 민중〉에서 상실의 뿌리는 깊기만 하다.

국가는 이름의 가면쓴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 군대와 경찰에 의한 살인 〈콜롬비아-살인자의 천국〉, 아이들의 정체성마저 앗아간 실종의 진상 〈도둑맞은 아이들-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남미 군사독재의 모태, 미군사학교의 정체를 폭로한 〈암살학교〉에선 그 가면이 벗겨진다. 다수 외국작품의 틈바구니 속에서 빛나는 국내독립영화들, 출소장기수의 생활을 담은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2-풀은 풀끼리 늙어도 푸르다〉와 잊을 수 없는 양심수들의 얼굴을 담은 〈그리운 얼굴들〉은 소중하기만 하다.

아스팔트위에 내팽겨쳐진 노동자의 고통과 투쟁을 담은 〈해고자〉, 우리나라의 10만 외국인 노동자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이야기, 싱가포르에서의 필리핀 가정부 사형을 다룬 〈플로 콘템플라시온 이야기〉, 끝날 수 없는 노동과 자본의 문제 〈미국의 꿈〉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쌓여가는 작품들 사이로, 영화제를 둡겠다고 찾아오는 자원봉사자와 꼬리를 물고 찾아드는 기자들로 좁고 시끄러운 사무실은 미어터지고 찾아온 사람들마다 짓는 뜨악한 표정으로 보아 이놈의 구석에서 도대체 영화제를 한다니 하는 놀라움과 미심쩍어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에 폭파진 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 번역, 테이프배달, 자막, 우편물발송, 전화결기, 안내, 판매, 원고집필 등 우리의 손발이 되어준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은 땀과 미소로 빛어져 있었다. 눈에 띠는 스타나 제대로

된 사진 한장 없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방송과 신문의 보도경쟁은 의외이기까지 했다.

스스로 '아마츄어의 승리'라고 부르며 만들어낸 카피며, 포스터며, 영화제 로고며는 흑평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영성한 번역문은 말썽을 부리고, 난생처음 자마실에 들어가 어마어마한 기계장치와 날밤을 새운 실무자들의 얼굴은 누렇게 떠가고, 긴장 속에서 나오는 높은 언성과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의 교차 속에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초침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상영장소측의 '최종불허통지'였다.

3. 뚜껑을 열고보니

우리의 '불허'된 행사장으로 불안한 걸음을 옮겼다. 팔안에 싸안은 필름은 멀고 있었다. 블이는 족족 학교측에 의해 떼어진 포스터와 안내문들의 찌꺼기는 읊시년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렵게 찾아낸 상영장소, '도대체 여기까지 누가 찾아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야외에서 마련된 개막제를 포기하고서야 얻어낸 상영장, 응성웅성대는 사람들, 손님맞을 채비를 못한 자원봉사자들의 야단법석 속에 드디어 막이 올랐다.

30여개국 양심수의 이야기를 담은 개막작품 '잊지 말자'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800여 관객들, 상영장 밖에 끝없이 늘어선 줄, 자리가 없어 돌아가는 인파를 보며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발노인, 서류보따리를 든 회사원,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온 부부, 더벅머리의 중고생,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관객의 다양함에 또 한 번 놀랐다. '인권영화'가 '사람'들을 제대로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튿날 들어온 '불법공연중지명령'에 우리는 웃어대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불법'과 '불온함'의 주장을 계면쩍게 만들어버린 잘 준비된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지에 의지해서 받아본 관객들의 느낌은 이러했다.

"다양하게 준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낸 모습 속에서 당찬 모습과 멋진 모습이었으며, 몰랐던 부분들을 접해서 알게 되고 깨달아 올바른 삶을 생각하게 하였고, 비판해보게 되었다."

"의도, 기획이 좋았고, 평소에 '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유도가 있었으면 한다. 이슈만 됐다가 끝나지 않기를"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사실만으로 감사한다"

"개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일수가! 인권영화제를 한다고 처음 들었을 때 50명-70명을 상상했었다."

"영화의 뛰어난 수준과 많은 관객수와 이런 영화제를 준비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동했습니다."

"돈많은 대기업이나 후원자들의 돈잔치가 아닌 자기 의지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잔치임이 좋았다."

"마음이 아프다. 평소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아 기쁘다."

"감각적, 자극적 영화에 실망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신선한, 짜임새 있는 좋은 영화를 감상한 것에 뿌듯해 할 것이다. 물론 나역시 새롭기에 좋다."

"영화의 가능성을 느꼈다. 신문이나 TV로 그것도 간접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제시된 내용들, 한시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도 결코 불가능할 이해, 관심, 공감을 느낀다. 영화의 힘이다. 돈주고도 못 볼 내용의 영화들을 볼 수 있어 즐겁다. 좀더 공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자리였으면 한다."

"이 영화제를 통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특히 제3세계) 인권의 현주소를 알게 되어 기쁘다. 영화는 인권소식꾼의 좋은 매체인 것 같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일반상영관을 찾던 관객으로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꽤 오래 추위에 멀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

지만, 다른 영상매체나 상영관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진작 이루어져야 했을 일이나 더 늦춰지지 않아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4. 다시 걸음을 옮기며

서울에서 막을 내렸지만, '제1회 인권영화제'는 지방에서도 계속되었다.

안산, 원주, 구미를 시작으로 14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영화제는 서울과 같은 장애물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 상영장소 불허, 보도통제, 기관원의 출퇴근 등과 맞물려 찾아든 추위 속에서 많은 지역관객들은 초라한 상영장에서 오들오들 떨며 영화를 보고 있다. '관객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웃지못할 구호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영화를 통해 만나는 감동의 크기는 결코 움추려들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만으로 충분했을 행사를 수고를 마다 않고 14개 중·소도시로 확대한 것 자체도 인권영화제의 의미에 걸맞는 일이다.

평소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지역 관객들에게

대항문화로서의 인권영화제

조 광 회

가을빛이 한창일 때 이화여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를 세 번 찾아갔으나 영화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개막식날 처와 둘이 갔는데 예상을 깨고 결코 적지 않은 크기의 법정대 강당이 가득 차는 바람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잠시 보다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시설이나 화질, 음질, 자막상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는 관객동원에 성공한 것 때문인지 못

내 흐뭇한 표정이었다. 비록 인권영화라 할지라도 어쨌든 영화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흥행의 성공인 모양이다. 잠시나마 본 영화는 유고 내전 속에서 여성들에 대하여 저질러진 참혹한 범죄에 대한 영화 "유령을 부르며"였는데 옆에서 보던 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며 분개하는 소리가 인상적이었다.

그 주의 일요일 날 다시 한 번 제대로 영화를 보기로 하고 김모, 이모 변호사 내외를 이화여대 대강당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면에서 멀익었지만 감동의 향내가 물씬 풍겼던 '제1회 인권영화제'를 뒤로 하고 우리는 '제2회'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올해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었지만, 관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 매끄러운 진행,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 부대행사의 마련, 자의는 아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개. 폐막 행사와 감독초청 등 2회에서 갖춰야 할 것들은 많기만 하다. 올해 상영된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작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처음인데 의외로 잘되었다'는 평가는 두번 다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화려함이나 규모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제는 인권의식이 물결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을 충실히 전달하는 심부름꾼 일 뿐이다. 정기적인 영화제 소식지 발간을 통해 관객들과 의사소통하며, '제2회 인권영화제'도 광범위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관객들의 참여로 일궈지는 잔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의 제법 큰 은행나무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는 처와 세 살난 아이를 데리고 일찍 캠퍼스에 들어가 두 시간 가량 산책을 하였다. 캠퍼스에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같은 낙엽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아이와 나는 망명정부의 지폐들을 한아름 주워 들어 서로에게 던지는 장난을 계속하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겼다. 날이 어둑할 무렵에 두 변호사 내외를 만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역시 자리가 없었다. 자리도 없이 어린 아이를 건사하기도 힘들거니와 찬 바람을 많이 쐈던 탓인지 갑자기 몸살 기운이 심하게 있어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영화제에 가는 것은 영 글렀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영화제 마지막 날 백모, 윤모, 임모 변호사님이 영화제를 주관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려 간다고 하여 재판도 없던 차에 덩달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인사가 끝난 뒤 영화를 보는 것은 접어둔 체 이화여대 앞의 숲집에서 몇몇 사람들과 술자리를 시작하여 취하도록 마시는 사이에 영화제는 끝이 났다. 결국 인권영화제를 평계로 금남의 구역인 여대에 세 번이나 진출하고 술만 잔뜩 마신 풀이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에 영화제 안내 책자에 신기 위한 짤막한 평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료주의를 비판한 쿠바 영화 "어느 판료의 죽음"과 미국의 L.A 사태를 흑인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조명한 "한 국가의 탄생" 두 편의 영화를 집에서 미리 비디오테이프로 볼 수 있었던 점이다.

이야기의 방향을 돌려보자. 언제부터인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나라의 국시가 되고 심지어 국민들의 좌우명마저 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력이 부족한 가망없는 사람들을 죄책감과 자괴심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한 구호의 제창자는 주로 정부기관과 기업인데, 그들이 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여

그런 소리를 외치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행은 앞뒤가 맞아야 하는 법인데, 요사이의 공안정국이나 노동법 개악 따위를 보면 저들 나름의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적어도 정부와 기업이 이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라도 한참 다른 모양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구호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류대학에 가고 보자" 라든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라는 말들과 같은 계보인데, 문제는 지금 외치는 구호는 일류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배운 값을 하겠다거나 또는 일단 재물을 모은 후에는 값지게 쓰겠다는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참아줄만한 장기적인 다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그 구호로 인하여 머리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힘없는 사람들이고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처에서 "밖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안에서는 좀 참아야 한다." 또는 좀 더 간명하게 말하여 "우선 이기고 보자."는 논리의 암초에 걸려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노동자들이 좀 참아야되고, 대북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안기부법이 여전히 필요하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내민주화가 유보되어야 한다. 심지어 한 가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피곤한 남편이 밖에서 경쟁에 뛰떨어지지 않고 일에 전념하도록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딜레마, 이 무서운 딜레마로 말장난을 하고 교묘한 논리를 유포함으로써 강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논리에 반기를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못살아도 좋다 라든가 정권을 넘겨줘도 좋다 또는 안보에 구멍이 나도 좋다 라고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고정되어 간다. 외부의 모든 상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의 경쟁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시스템은

계속하여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계속하여 유보되고 심지어 후퇴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저당잡힌 채 마멸되고 사라져 갈 것이다.

군대와 경찰이 우리의 삶을 누르는 가시적인 대상이었을 때에는 차라리 맞서 싸우기 쉬웠다. 왜냐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비교적 분명하였기 때문에 힘을 모으기 쉬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교묘한 논리와 번지르르한 모양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흘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느끼거나 견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구호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이건 저들이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만이 진실인 양 유포된다. 저들의 생각과 감정이 절대 선인 양 날마다 신문에서, 방송에서, 영화에서 아름답고 단단하게 포장되어 우리의 의식에 스며든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단지 돈이 많고, 힘이 세 뿐, 천박하기 이를 데 없어 상종할 대상이 못되었던 무리들이 어느새 옳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모범이 되고 있다. 저들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대상, 우리를 억압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저들에게도 나름의 진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저들은 옳고 아름다운 것으로 단정되고 저들의 생각과 감정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드높이 울려퍼진다. 저들은 신문을 가지고 있고,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대학을 가지고 있고, 극장을 가지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두 주먹외에는 마음뿐이다. 그런데, 모든 매체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 결국은 우

리의 마음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볼 권리가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고, 빛은 빛대로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할 것인가. 힘센 자, 가진 자보다는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가 압도적 다수임에 분명한데, 자신이 약한 자, 가지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보다 적은 것 같고, 그 외침과 속삭임은 모기소리보다도 작게 들린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또 다른 조건이 되어 현실을 고착시키고 재생산한다. 이러한 상황은 불합리하고 불의하다. 그러므로 참을 수 없다.

1996년 6월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제7회 인권감시 국제영화제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적인 사고와 감정만을 강요하는 일면적인 문화적 풍토 속에서 다른 진실, 다른 삶에 관한 이야기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화적 편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울증에 걸려 본래 어둠 속에 있기에 잘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아예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우리의 진실에 관한 문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가능한 출판물 중의 일부, 완전하지는 않아도 진실을 보다 잘 전달해주는 한 개의 신문따위가 있다. 영화도 있기는 하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실을 포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소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속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강한 것만이 아름다운 시대, 성공한 자에게만 주권이 있는 세계, 영리한 자에게만 열려있는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다같이 더 잘 살아보자고 모여 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고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구분하고, 규정하고, 경쟁시키고 도태시키고 폐기처분하고 나면 끝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하여, 우리는 그곳에 없었다고 하여,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어떤 인간들의 배았긴 권리가 배았기지 아니한 것으로 될 리도 없고, 그 괴로움이 즐거움이 될 수도 없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문자의 시대에 문자를 통하여 보았다면 영상의 시대에는 영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고, 그 상황은 개선되지 아니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등이 주관한 제1회 인권영화제는 이러한 복잡한 맥락 속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매체인 영화를 통하여 다른 진실을 알릴 권리, 다른 진실을 볼 권리 to 주장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매개로 생성하고 유포한 지배적인 문화가 독점하고 있는 문화적 영토의 일부가 사실은 우리 것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있어 버린 영토의 회복을 주장한 것이다. 이 세계가 수퍼모델처럼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할 때 누군가는 길을 비켜서야 한다는 당연한 진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제 인권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올해의 열기로 보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요즈음의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접할 수 있었던 회소식이 영화의 사전 검열에 대한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인권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정도였다는 사실은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현재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진전되는 부분이 있다

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충분히 열광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일부 사람들의 일부 문화가 모든 문화를 대변하는 것인 양 고빠풀린 망아지가 되어 세상을 휘젓고 다니게 된 것에는 그 일부 사람들의 문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낡은 방식으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려 하였다는 것에도 큰 책임이 있다. 이제 저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화라는 매체의 영토에 우리는 저들의 문화가 표현하고 함축하고 있는 생각과 정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대항문화로서의 인권영화제가 그 깃발을 들고 나타났다. 이번 인권영화제는 진보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무감각해졌다고 요사이의 각박하고 개인적인 시류를 탓하기 전에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형성해가는 현재의 사람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설득하고 불잡아두려는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훌륭한 실험이었다.

인권영화제 안내책자에 실린 어느 협찬광고에 포함된 광고문구는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천박한 구호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자 인권영화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문구는 이렇게 써여 있다.

"더디 가도 사람생각하지요."

대인권영화제 감상공모작

지하의 민중을 보고

이 주 헌(동대문구 휘경1동)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불리비아의 한 도시.

무장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송장이 되어 거꾸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 의해 실려 오는 부상자들.

마치 80년 광주의 비디오를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는 쿠데타의 총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파묻히는 등 마음만큼 복잡한 생활을 하며 고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화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진다.

군부의 총칼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 사람들과 도로를 봉쇄하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있는 광산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똑같이 군부에 의해 탄압 받고 있는 불리비아 민중들이다.

안데스의 거친 자연 환경과 서비스찬의 시선에 따라 떠오르는 과거의 모습들, 미제국주의가 행하는 원조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서비스찬과 제국주의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일어난 군사쿠데타와 이로 인해 죽어 가는 민중들의 모습은 현재의 서비스찬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 주었다.

결국 서비스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기로 마음먹고 어릴 적 보았던 '죽음의 춤'을 추었다.

마을 사람들이 광산 노동자 드로가 함께 군부에 저항하고 돌아올 때 서비스찬을 둘로 쳐죽이려 하지 만 마을 노인들의 만류에 서비스찬은 춤을 끝까지 춤을 출 수 있었다. 결국 서비스찬의 장례식을 통해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두 참여하면서 안데스의 산신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

안데스의 거친 자연 환경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박한 삶의 모습이 베어 나오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또한 이들의 소박한 삶이나 도시의 삶 또한 역사와 현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44

이
달
의
민
변
·
12
월
호

하비밀크의 시대를 보고

이 경 숙 (인천시 서구 석남2동 이경숙)

나는 레즈비언도 성전환자 - 나에겐 아직까지 이 두가지 개념이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어쩌면 이들을 향한 마음에도 조금쯤의 차이를 두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 도 아니다.

내가 처음 그들에 대해 접하게 되었던 것은 '크라잉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고 부터다. 그 이후로 TV 등을 통해 봇물 터지듯 소개되었던 글들의 문제에 대해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호(?)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야릇한 거부감, 역겨움 같은 것이 알 수 없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엔 말 그대로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간절함을 가지게 했을까? 인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궁금증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인권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최초의 게이 정치가였던 하비밀크의 생애에 대한 다큐가 상영된기에 반기운 마음으로 친구를 대동하고 이화여대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영화중 작은 탄식과 웃음 그리고 내 옆에 앉았던 어느분은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다. 하지만 난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다. 굳이 게이가 아니라 그저 소수 단체의 인권운동으로 밟다들여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직 우리에겐 그들에 대한 입지도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는데…하는 아쉬움.

이 영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보고 싶다는 지나친 욕구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대한민국의 인권속에 동성애의 자리매김이 아직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일까?

내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그들 삶의 모습, 한국적 상황에 놓인 모습을 보고자 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무관심이든 아니면 배척이든 그런식의 모양새를 벗어 버리고 조금쯤 일반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의 바람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 내게 당신이 왜 여자인지, 어째서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글을 접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이치를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소수 단체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일 테니 말이다.

끝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성전환자나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들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회원이 될 수 없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임엔 참석할 수도 없는 것인지.

만약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거창하게 인권운동에 동참하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을 조금 가까운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회지가 있다고 들었다. 그 회지만이라도 받아볼 수 없는지 알고 싶다.

45
표
현
의
자
유
와
법

•
•
•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편집자주

이 자료들은 언론위원회에서 경실련, 민교협, 기자협회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는 지난 1995년 7월 20일 총무처가 정보공개법안을 입법 예고한지 1년이 넘어서야 정보공개법안의 국회제출(15대 국회)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수정된 정부의 법안이 총무처가 제출한 정보공개법안보다 퇴보하고 정보공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최되었습니다.

본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적극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써 정보의 균등한 소유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형식화를 막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소수권력집단에 의하여 독점되고 일반 국민이 그에 접근하지 못하여 겪는 문제 등의 불식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에도 제사회 단체로 부터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 경과보고

사무국

1.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있기까지

지난 11월 2일,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있었다. 교류회에는 한국측에서 50명의 변호사가 참가하였고 이 중 비민변회원은 6명이었다. 일본측은 애초에 3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9명이 참석하였고 이중 재일교포법률가는 3명이었다. 양국의 법률가들은 각자의 관심 주제별로 빌제를 하고 토론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특히 이전의 교류회에 참가하여 이미 면식이 있는 변호사들간에 반갑게 우의를 도모하는 모습이 훈훈하였다. 한편, 일본측 참가자들은 교류회 전날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유가협,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방문하여 양심수 가족들을 만나고 노동계의 동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교류회가 끝난 다음 날에는 판문점을 방문하여 한국의 분단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번 교류회가 있기까지는 이미 민변변호사들과 일본 변호사들간에 92년(경주)와 94년(일본 코베와 오사카)에서 두차례의 교류가 있었고 두번째 교류회

48 이달의 민변 12월호

에서 한일법률가들간의 교류모임을 정례화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두차례 교류회에 참석한 일본 변호사들은 상설의 단일한 민주적 법률가 단체가 아니고 교류회에 참가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일시적 성격으로 모인 반면에 한국은 민변이란 단체가 참가한 것으로 참석 주체의 단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되었다. 그래서 일본측이 개인들로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듯이 한국측에서도 민변회원들의 범위에서 일반변호사들에게까지 확대된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물론 이제까지 민변이 해왔던 연락이나 실무담당 조력 등은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측과 한국측 모두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일한)법률가 교류회'라는 준비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올해 서울에서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가 개최된 것이다.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모임의 한국측 대표는 최영도 변호사, 위원장은 김형태 변호사가 맡았고, 위원들로는 백승현, 임종인, 도두형, 박성호, 조광희, 최은순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일본측 위원장은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 연락책임자는 카주유키 아주사와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마침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최은순회원은 일본측과 접촉하여 일본의 준비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연락을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일본측 빌제문의 원고 중 일부는 번역을 담당하는 수고까지 해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95년 4월부터 96년 6월 까지 양측의 의견교환을 통해 교류회의 명칭, 일정 및 주제등을 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과정에서 일본측의 빌제문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일본어 파일의 컴퓨터 호환 문제, 교류회 장소 및 식사예약 등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소설의 해결과 예산 감축에 공헌한 윤기원회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조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도 사회와 통역, 번역 등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 교류회 진행보고

일정

• 11.2(토)

1:30-2:30 개회식-지하 대회의실

(사회: 김형태 변호사/통역: 임종인 변호사)

2:30-4:00 분과회의-지하 중회의실 1,2,3에서 동시진행

제1분과 빌제: 무라 카즈오 변호사

이국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사회: 타카기 쿠니오 변호사/통역: 조성철 변호사)

제2분과 빌제: 오키무라 시카노부 변호사

/ 김진국 변호사

(사회: 사사키 타케야 변호사/통역: 경수근 변호사)

제3분과 빌제: 사카구치 토쿠오 변호사

/ 이성재 변호사

(사회: 박주현 변호사/통역: 도두형 변호사)

4:00-4:10 티타임-복도

4:10-5:30 분과회의-지하 중회의실 1,2,3

6:00-8:00 저녁만찬-1층 로비

• 11.3(일)

10:00-12:30 전체회의-지하 대회의실

빌제: 나카야마 타다카즈 변호사

/ 장주영 변호사

(사회: 류중원 변호사/통역: 임종인 변호사)

12:30 점심-서초대원한정식

교류회 첫날, 일본측 참가자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도착하였고, 한국측 변호사들은 다소 늦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를 넘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약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들간에 사전에 교류회의 의의와 참가의미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감대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 했던 감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번 일본에서 열렸던 교류회에도 43명이라는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하였던 반면에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임에도 참가자 수가 기대보다는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실제로 교류회에서 발제한 내용보다 교류회를 위한 자료집으로 제작된 일본측의 빌제자료 내용의 부실함 등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비판적 목소리 등도 있어 앞으로 교류회를 준비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반성케 하기도 했다. 자세한 평가 내용은 앞으로 제시될 이번호 이달의 민변에 쓰여진 다른 회원들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류회는 양국의 진보적인 변호사들간의 연대·협력의 유일한 기회로서 의의가 있다. 최영도 회장의 인사말씀처럼 참가한 모든 법률가들이 이러한 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법률가들이 단지 친선을 도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한일관계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기를 기대한다.

3. 재일동포법률가들과의 간담회

11.3(일) 3:00-6: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일본에서 온 재일동포법률가들 7명(배훈 백승호 박현수 은용기 조성철 윤영화 김용개)과 한국측법률가 14명(최영도 백승현 홍성우 송두환 유중원 임종인 윤기원 이오영 박성호 이기욱 최병모

• • •

감상 (感想)

아주사와 가주유기

나에게는 처음인 38도선 견학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버스에 타고 경계선에 가까워질수록 자연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경이로웠다.

삼엄한 철조망, 긴박한 분위기의 병사(兵舍), 무장한 장갑차 사이를 누비면서 차가 달리면, 원쪽으로 추수가 끝난 밭에서 기러기떼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이어 오른쪽으로 곧 커다란 외로움을 보이는 지독한 추위의 우울한 허공을 지나쳐 간다.

풍부한 물로 가득 채워진 임진강의 저편 언덕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너른 물결을 보면서 1970년경 일본에서 불려졌던 가사를 읊조렸다.

임진강 물 맑고 도도하게 흐른다
물새 자유로이 폐지어 어지럽게 나르네
내 조국 남쪽 땅
생각은 아득히
임진강 물 맑고 도도하게 흐른다.

북측을 전망하는 언덕위에서 보이는 낙엽수 수풀

일본측을 대표하여 阪口德雄변호사가 일본의 민주

유옥 민홍기 이동학)이 참석했다. 발제는 유옥, 배훈 변호사 그리고 사회에 박성호 변호사, 통역에 임종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와 토론은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뒷풀이에서도 재일동포법률가들의 생각과 지위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

붉은잎의 담담한 색도 인상적인 풍경으로 가슴에 남아 있다.

오랜 세월 감옥에 억류된 장기수, 경계선에서 갈라진 이산가족과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국가보안법, 요컨대 한국의 처한 거친 현실을, —그것은 아시아의 현실이기도 하다— 경계선 가까이의 아름다운 자연은 역설적으로 말해 주었다.

제3분과회 '시민생활과 법률가의 역할'에 참가한 감상은 여기에서 쓴 분단현실의 확인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 분과회의 토론주제는 일본측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군사정권하에서와는 크게 다른 시대환경에 처해 있다.'

민중의 생활수준의 변화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시대의 변천, 대중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가가 관여하는 운동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그때그때의 성과도 있었다. 지금도 민주적인 법률가가 관여하는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 일 각각의 법률가운동의 역사를 교류한다면 흥미깊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상이었다.

적 법률가운동의 대략적인 역사와 현황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는 탄압반대투쟁, 노동운동에의 관여, 공해투쟁, 스몬, HIV 등의 약해반대투쟁, 시민음부즈만 등과 운동영역을 확대하여 온 일본 법률가운동의 발전과 그 요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책임하에 정리된 것이었지만, 납득이 가는 것이었다.

특히 법률요건에 구애되는 법률가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안을 탐구하여 운동을 조직하고 암도적인 여론의 포위에 의해 승리를 획득하여온 경과와 운동의 법칙성을 다룬 점, 일본의 법률가운동이 점차 새로운 운동영역으로 참가해 가는 경과는 흥미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같은 보고에 대하여 한국측으로부터 제기된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견은 나로서는 약간 의외였다.

1. 민주적 법률가의 주요한 역할은 개별 운동에 관여하여 성과를 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해결, 예를들면 입법투쟁 등에 있는 것은 아닐까.

2. 분과위의 주제는 '시민생활과 —' 라기 보다는 '시민사회와 —'라는 것으로 치환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3.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면서 생활보호세대 중 짚어죽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하여 일본의 법률가는 어떻게 대처했는가(질문자의 의도는 그같은 사회의 구조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개혁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 있다 고 생각되었다.)

이같은 한국측의 코멘트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국지적인 투쟁의 발전방향을 논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변혁과 연관하여 논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세상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사회 전체가 변혁기에 있다고 걸치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전망을 갖기 어려운 만큼 전체보다 개별적인 것에 눈이 가기 쉬운 것이 틀림없다.

한국의 법률가의 지적이 그러한 방향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서준식씨의 '인권투쟁은 국지적인 해결을 보는 것 이 적지 않지만 그만큼 인권활동가는 자족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지적도 있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적인 법률가들은 관념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현장을 기어 돌아다니면서 시대의 본질적인 양상을 파악하려고 고전분투해 왔으며, 개별적인 투쟁에서 조그마한 승리를 획득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고무시켜 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일본의 양심있는 법률가들은 결코 전체를 시야에 놓치는 일 없이 전체, 일본만이 아니라 남북문제의 모순을 포함한 세계전체를 시야에 두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예를들면 최근 일본에서 극적인 경과를 거치면서 해결점에 이르른 약해 에이즈반대투쟁의 경험은 귀중하다. 그것은 피해자가 차별받는 엄한 현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실명을 밝히고 청년, 학생, 메스미디어의 양심적인 사람들, 우리 혼신적인 법률가와 연대함으로써 완고한 관료체계에 균열을 기하여 재판소도 뒤흔들었던 귀중한 체험이다.

이 투쟁은 하나의 약해극복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

한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었다. 국지에 철저하게 파고 내려가는 것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격려한 것이다. 피차 이러한 경험을 충분하게 전하는 바에는 보다 더 상세한 정보와 토론을 위한 풍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조선반도분단의 엄한 현실은 보다 더 엄한 체적인 사고, 전체적 전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쌍방이 처한 환경의 차이는 법률가운동의 존재방식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최후까지 없앨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한일교류가 지금까지 솔직하고 기坦없는 의견교환을 해왔다는 것

• • •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의 성공을 축하하며

일본측실행위원회 대표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

52

이 달의 민변 12월호

감사합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지만 일본의 책임으로 먼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몇 년간의 교류를 통하여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법률가들사이에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웃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번 회의의 성공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한국측 실행위원회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노력에 우리들은 기슴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일본측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정성껏 한국측의 노력으로 회의가 성공하였다는 점을 기뻐하고 또 한국이 처한 엄혹한 상황에 대하여 인식이

이다. 다양한 민중레벨의 교류에서 이것만큼 열띤 논의를 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모처럼의 논쟁적인 논의의 짜을 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차의 보고와 의견을 들은 감상을 계속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장(미디어)이 요망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 월간민변은 가장 적합한 장이고, 일본측으로서도 이러한 장을 받아 한국 변호사의 기고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끝으로 한국의 모든 선생들의 우정넘치는 환영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다.

깊어졌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 친구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가까운 장래에 일본과 한국은 천수백년전 옛날과 같이 어느 나라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평화적인 우호국가로 관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국 민중간의 우정이 필수불가결하고 일한법률가 사이의 교류는 그 제일보입니다. 세계에서 인접한 양국 법률가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측은 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류가 양국의 평화를 위하여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전체회의와 판문점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류회에 어울리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측, 일본측이 각각 '안보조약'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장변호사가 한미안보문제의 심각함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보고는 우리들에

개는 처음 듣는 사실이었고 여러분의 국가의 심각한 현실에 우리들은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평화를 위한 토론은 처음이었고 또 시간의 문제도 있어 토론이 충분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 나라가 처한 문제의 소재를 알수 있었던 것은 성과였습니다. 이 평화의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의제로 하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일한 양국의 법률가가 극동 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을 결의한 것은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열었던 것 이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우리들은 판문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버스로 미국이 승차하여 안내하고 회의장 밖에서는 창너머로 북측의 군인이 우리들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 분단된 엄혹한 현실을 다른 나라의 우리들에게 예리하게 들이대는 것이었습니다. '판문점을 보고나서 회의에 참석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일본측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일본인이 한국의 정서에 대하여 관념적으로만 알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극동 아시아의 법률가의 평화를 위한 연대의 고리가 한국과 일본의 회의를 중심으로 곧 중국으로 그리고 몽골로 하나 하나 넓히는 것을, 나는 몽골의 법률가와 교류하는 일본측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있다.

과로사 분과회의에 참가하여

김진국변호사의 보고는 한국의 과로사의 법적문제의 도달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고 참으로 수준 높은 내용으로서 일본측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일본의 대표적인 노동법 잡지에 소개할 예정). 일본측은 다마끼 가즈나리 변호사(과로사변호단사무국장)는 일본 변호사가 과로사문제와 싸우는 실천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두 보고를 듣고 기본적으로 통감한 것은 다른 근대 국가에는 없는 '과로사'가 양국 공통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이고 또 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고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과로사'이지만 행정상 노동재해로 인정되는 건수는 양국 모두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재판으로 싸운다면 한국에서는 널리 구제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아직 '좁게'(자체에 넓혀질 것이라고는 해도) 일본과 비교되는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재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담당하고 분과회의에서 보고한 장시간 노동 끝에 자살한 사건은 자살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어 1억2천6백만엔(110만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저서 '자살과로사재판' 니다이세몬드사, 한국 측에 10부 증정).

이러한 양국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실천적으로 상대 나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통감하였습니다. 노동시간단축 운동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함과 동시에 양국 경제의 공정한 경쟁의 전제이고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원기높은 민주노총, 전교조

방한한 첫째날, 나는 노동그룹으로서 민주노총, 전교조의 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활발한 노동운동은 한국이다'라고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법학자 나카야마교수(와세다대학)은 하고 있고 위 의견과 같은 의견인 나는 전부터 그 한국의 노동운동을 진정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교조가 해고된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53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

하여 기업의 요청에 충실히 따르는 값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육성하는 것이 제창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전체 변호사의 실상이나 후배의 육성에 대해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

이미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일본변호사가 유럽의 법조양성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당시)서독을 방문하여 그곳의 연수생에게 변호사가 인권수호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질문이 끝나자 마자 그것은 행정적인 일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서독에서 변호사는 비지니스맨이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잘 이해되었다. 한마디로 변호사라고 해도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바람직한 모습은 충분히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그러한 점에서 나는 한국의 변호사의 실상에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흡사한 법조양성제도와 판사임용제도를 가지고 있고, 실체법 절차법도 상당히 유이하다.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가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법조양성분과에서는 한국측 보고자가 대학원생 이어서 시민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었고, 게다가 법적으로 정리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한 인선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현재 일본의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존중 확증하면서도 의뢰자와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아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배려하는 사건처리의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때로는 의뢰자에게 돈이 없어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임한다거나, 또는 공해재판을 비롯한 권리구제소송을 맡아서 이행하는 원동력이 되

제1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기

강화하라 이쿠로

두 조합을 둘러 보고 나만이 아니라 일본측 변호사 전원은 짧은 교류의 시간이었지만 전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노동법개정투쟁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귀국후 민주노총이 11월 10일 7만명의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1년 5월, 처음으로 민변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들은 전노협, 전교조도 방문하였습니다(1992년의 방한때에도 방문하였으므로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1991년 5월 전교조를 방문하였을 당시 나는 일본노

동운동의 변질에 실망하여 삼십여년 계속해 온 노동운동으로부터 몸을 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가 전교조의 격렬하고도 밝은 모습으로 싸우는 것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일본의 노동자와 함께 있고 일본 노동자의 미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운동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1회 평화와 인권을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참가하고

변호사 다나까 시게히토

나는 '제3회 민주적 한일법률가교류회'라는 느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분위기가 일본과 한국에서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는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률가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명칭은 그 의미에서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주, 고베, 그리고 이번, 어느 모임도 매우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은 사법문제의 분과회의에 참가하였지만 한국측의 보고를 듣고 두 나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법개혁의 논의가 일어났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논의는 속도가 빠르고 실현하는 것도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강대하다고 느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지만 일본측의 준비에 비하면 한국측의 준비는 충실히합니다. 일본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측이 신중하게 준비하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고문서를 읽는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토의, 논의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동포 변호사의 교류회에 참가하여 매우 흥미 있는 의결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본 변호사가 참가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하는 수에서 조금씩 우리 쪽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반가운 사람들과 한 대화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계기로 개개의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어 이번에는 참가하지 못한 박찬운 선생의 소개로 인천변호사회의 변호사들과 서로 알게되었고 올해 3월에 인천에 내가 속한 사이다마 변호사회와 인천변호사회의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3월에는 인천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몇 명 사이다마 변호사회를 방문하여 당직변호사제도에 관한 교류회를 가질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를 쫓아 가면 민변과 한 교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인권과 변호사의 교류가 한층 더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나의 이야기의 마지막 말은 벌써 다음 교류회가 간절히 기다려 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배훈, 유욱 변호사의 글은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직후
이 일정과는 별도로 진해원 재일교포간담회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고 있다. 변호사직무의 전문성이나 공익성은 여기에 서 연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본의 기업에게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다. 변호사는 돈이 드는데다가 기업이 말하는 것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변호사증원론자중에는 증원에 의해 현재변호사의 실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증원론이 비지니스 로이어로 변호사를 변용시키려는 것뿐이라면 논의는 간단하다. 그러나 법적구조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가 상담에 응하고 있는가, 변호사비용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적당한 가격인가, 변호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적절한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변호사라는 소수의 인간에 의해 직역이 독점되고 있는 폐해때문은 아닌가. 이러한 논의는 일면으로 변호사 전체가 생각을 가다듬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전문성이나 공익성을 근거로 현상을 시인할 수는 없다. 어떠한 변호사가 요구되면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인권파로 생각되는 변호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의 법조증원론은 단적으로 변호사의 특권을 비판하는 것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관여하는 변호사나 변호사제도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을 제외하고서 시민과 변호사와의 거리는 일본의 그것보다도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개혁은 변호사나 사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진 개혁제안이라기 보다는, 현상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은 움직임이었다고 본다. 게다가 법조심사협의체도(사법에 관한 입법 개정제안은, 최고재판소, 법무성, 일본변호사연합회 삼자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하는 국회의결에 기한 협의)가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 의회의 의향이 단적으로 법률에 반영된다. 그러한 환경아래에서 이번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4. 분과회 자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일본한국 모두에게 이번 개혁은 앞으로 계속될 대규모적인 개혁흐름의 시작인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흐름속에서 변호사 모두가 자기혁신과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실현을 향하여 얼마만큼 노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본래 우리는 여론이나 전체국민, 또는 정부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바라는 것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향하여 한일의 환경적 요인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도 서로의 경험과 운동 성과에 대한 교류를 계속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운동단체에서 본다면 상당히 한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늘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익한 교류회를 준비하는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일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

1996. 11. 3. 변호사 배 훈

1. 재일한국 조선인 존재의 유래

이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이다. 1910년의 한일합병전의 재일한국 조선인의 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수백명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1919년), 산미증식계획(1920년부터 1934년)에 의하여 토지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동시에 농촌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1930년에 이르러서는 약 9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9년 이후 강제연행(모집방식, 관 알선방식, 징용방식)에 따라 1945년 8월 독립해방시에는 약 230만명이 되었다.

독립회복후 본국으로 귀환이 시작되어 1947년 9월에는 약 53만명이 되었고, 지금은 65만명이다.

2. 재일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의 변천

(1) 외국인 등록령(1947)

재일 외국인 일반에 대한 넓은 의미의 출입국관리를 법제화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가. 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유엔군 관계자를 제외

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재일한국 조선인등에도 적용한다는 간주 규정

다. 외국인 입국의 일반적 금지

라. 외국인의 등록의무

마.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

이 법령은 현재의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등록법을 겹치는 것으로 등록증명서의 상시휴대의무, 제시의무도 규정하고 있었고 개인의 동일성의 확인은 사진에 의하여 하였으며 지문날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출입국관리령(1951)

외국인 등록령과 별도로 좁은 의미의 출입국관리를 규제하였던 것으로 재일한국 조선인 등에 대한 간주규정은 없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1952)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어 출입국관리권이 일본으로 이관되다.

(4) 법무성 민사 갑 제438호 민사국장 통달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과 호적사무의 처리)(1952)

재일한국 조선인의 일본국적 상실
입관령등 대 외국인규제법의 대상이 되다.

(5) 외국인등록법(1952)
외국인등록령을 외국인등록법으로
지문날인규정

(6) 포츠담법 - 법률 제126호(1952)

(7) 일한법적지위협정(1965)

(8)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1982)
입관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일반영주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가.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될 것
나. 소행이 선량할 것
다. 독립생계를 영위하기 충분한 자산이나 기능을 보유 할 것
이다.

그러나 법 제12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손에는 위의 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영주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9) 외등법 개정(1982)
등록 간수를 3년에서 5년으로
지문날인 회수의 감소

(10) 91년 문제

(11) 입관특례법(91. 11. 1. 시행)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2년에서 5년으로)
퇴거 강제사용의 완화

(12) 외등법의 일부 개정(93. 1. 8. 시행)
지문날인 폐지
사진, 서명, 가족사항의 등록 의무

3. 외국인등록법

(1) 등록의무(제3조)
입국시부터 90일 이내, 출생시부터 60일 이내에 사진을 첨부해서 거주지 시정촌에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단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사진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등록증명서의 교부(제5조)
시정촌의 장은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

(3) 등록증명서의 휴대 제시의무(제13조)
등록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입국조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해상보안관이나 그 외 법무성령이 정한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집행을 하면서 등록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4. 재일한국 조선인의 일본국적상실 - 평화조약

(1) 1910년 한일합병에 따라 모든 한국인은 일본국적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호적에 관해서는 별도였다.

(2)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 4. 28.) 제2조 제a항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조선에 대한 일체의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만 규정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평화조약 발효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과 호적사무의 처

리](법무성 민사 갑 제438호 민사국장 통달)에는

가. 조선과 대만은 조약발효일(1952. 4. 2.)부터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므로 이에 따른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하여 모두 일본국적을 상실한다.

나. 조약발효후에 조선인과 대만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국적법에 규정된 귀화절차를 밟을 것을 필요로 한다.

5. 법률 제126호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국인은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관법의 규정이 되었지만, [포츠담선언 수락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관한 전에 기초한 외무성관계 제명령의 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 조약 최초의 효력발생일에 일본 국적을 이탈하는 자로,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이 법률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토에 거주하는 자(그 기간동안 본토에서 출생한 그 자녀 포함)는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1951년 정령 319호)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자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결정되지 까지 동안 계속 재류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재류할 수 있다] 고 하여, 이 법률 시행일인 1952년 4월 28일 까지 거주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입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정재류자

이에 대하여 1952년 4월 29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입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재류기간 3년의 재류자격밖에 인정되지 아니하였다.(입관규칙 2조 2호, 같은 3조 7호, 입관법 4조 1항 16호)

특별재류자

특정재류자의 자녀의 재류자격은 더욱 불안정하게 되어 재류기간 3년이하의 재류자격이 되었다(입관규칙 2조 3호, 같은 3조 6호, 입관법 4조 1항 16호).

이와 같이 재일한국 조선인의 재류에 관한 법적 지원은 일본에 오래 거주하면 할수록 불안정하게 된다는 일본정부의 정책에 지배되었다.

6. 한일법적지위협정

이런 상황에서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재일한국 조선인의 재류자격부분만을 보더라도 지극히 불충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협정영주권자]에도 강제퇴거사유가 온존된 것(동 협정 제3조), 교육 생활보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동 협정 제4조 a), [이 협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는 전적으로 외국인에 적용되는 일본의 법령적용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외국인등록법과 그 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동 협정 제5조) 등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규정 범위에 있어서나 지극히 불충분한 것이다.

7. 91년 문제

(1)[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규정](1965. 12. 18. 조약 제164호, 1965. 12. 18. 조약 제28호)

제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 어느 것에라도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국정부는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한 자

b. a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1945년 8월 16일 이후 이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그 후 신청 시까지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2. 일본국 정부는 1. 위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의 자녀로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해 일본국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을 허가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 이 협정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경과한 후에 출생한 자의 영주허가신청기한은 1.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출생일로부터 60일 까지로 한다.

(2) 위 조약의 효력발생일은 1966년 1월 17일 이기 때문에 협정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가. 1945년 이전부터 신청시(1971. 1. 16.)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한 자

나. 1945년 8월 16일 이후 신청시 까지 출생한 자

다. 가. 또는 나. 의 자녀

에 한정된다. 1971. 1. 17. 이후에 출생한 자의 자녀는 협정영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그래서 (협정영주협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

1. 일본국정부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거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

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협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기초가 된 정신과 목적이 존중되는 것으로 한다.

(4)(법적지위협정)의 효력발생일은 1966년 1월 17일 이기 때문에 재협의는 1991년 1월 16일 까지이다. 즉 위 협정에 따라 영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재일한국인의 재류자격은 이 재협의의 성과에 달려있다. 이것이 '91년 문제'이다.

8. 1991년 한일 외무부장관 각서

(1) 입관법 관계

가. 간소화한 절차로 기속적으로 영주를 인정한다.

나. 퇴거강제사유는 내란 외환의 죄, 국교 외교상의 이익에 관계된 죄와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한다.

다. 재입국허가에 있어서는 출국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2) 외동법 관계

가. 지문날인에 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년이내에 지문날인을 대신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지문날인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진, 서명 또는 외국인등록에 가족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대하여는 운용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계속 검토한다. 이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후로도 재일한국인의 처지를 배려하고 상식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에 보다 철저하도록 노력한다.

(3) 교육문제

가. 일본사회에 있어서 한국어 등의 민족전통과 문화

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재일한국인사회희망을 이해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학교의 수업 외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나 한국문화 등의 학습이 앞으로도 지장없이 행하여 지도록 일본국정부로서 배려한다.

나. 일본인과 마찬가지의 교육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취학안내를 발급하는 것에 관해서 전국적인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

(4) 공립학교의 교원채용

그 길을 열고 일본인과 같이 일반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각 도도부현을 지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임용에 관한 국적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신문의 안정이나 대우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5) 지방공무원의 채용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국적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를 지도해 나간다.

(6) 지방자치제 선거권

한국정부로부터 요망이 표명되었다.

9. 입관법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초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했던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별법](입관특례법)

(1) 재류자격

가. 법정특별영주자 (3조)

법률 제126호 -2-6 해당자, 협정영주자, 특례영주자 등은 특별영주자로서 영주할 수 있다.

나. 특별영주허가 (4조)

입관특례법 시행 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영주를 허가한다. 신청절차는 시구정촌의 장에 위임하고 있다.

다.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하여 재류한 자 중에 정주자 등 재류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기초하여 특별영주자로서 영주를 허가한다. 신청절차는 지방입국관리국이 행한다. (5조)

(2) 강제퇴거 (9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가.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1, 2호)

나. 외국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법무대신에 따라 그 범죄행위로 일본의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 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자 (3호)

다. 무기 또는 7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로 법무대신에 의해 그 범죄행위로 일본의 중대한 이익이 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자 (4호)

(3) 재입국허가 (10조)

특별영주자에 있어서는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4년 이내로 하고, 다시 1년 이내로 한하여 재외공관에 서 연장을 허가 받아 재입국허가에 따른 출국기간을 최장 5년으로 한다.

10. 외국인등록법

(1) 자문날인의 폐지(14조)

(2) 서명의무(14조의 2)

11. 교원채용

(1) 1965년 12월 2일 문부성 차관 통달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공립소학교 또는 중학교 또 이와 같은 학교의 분교 또는 특별학급은 이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이와 같은 학교를 학교교육법 제1조의 학교로서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선인 교육에 있어서는 일본인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교육과정의 구성, 실시에 있어 특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1982년 9월 1일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관한 외국인교원임용 등에 대한 특별 조치법)

(3) 1982년 9월 13일 문부차관 통달

국공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으로는 종전과 같이 외국인임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62

이
달
의
민
변
·
12
월
호

(4) 1990년 1월 10일 한일외상각서

(5) 1991년 3월 22일 문부성 교육조성국장 통지 [재일한국인 등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의 공립학교 교원임용에 관하여]

가. 1992년도 교원채용시험으로부터 일본인과 동일기준으로 시험응시를 인정할 것

나. 임용기간을 불이지 아니하는 상근강사로서 정식으로 채용된다. 이 강사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에 한한다.

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장이 행하는 교무운영에 참가함으로써 공적인 의사형성에 참여가 직무로서 인정되는 까닭에 일본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임

용될 수 없다. 상근강사는 교무운영에 보조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그치고, [당연한 법리]의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라. 상근강사가 학급담당이나 교과담당이 되는 것은 방해되지 아니한다.

마. 상근강사가 주임의 직을 맡을 수 없다.

바. 급여 등 대우는 교원과 차이가 적도록 배려한다.

12. 공무원 임용

(1) 1979년 4월 13일 오오히라 수상 답변
공권력행사 등에 종사하는 직무인지 아닌지 또 임용할지 밀지는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판단할 문제이다.

(2) 1990년 1월 10일 한일외상각서

(3) 자치성의 지도

일반사무직은 채용불가

13. 지방자치체 참정권

(1) 1990년 1월 10일 한일 외상 각서

(2) 참정권 소송

가. 오오사까 지재, 고재

선거인명부 부등록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나. 후꾸이 지재, 나고야 고재 가나자와 지부

선거인 명부 불기재 위법확인과 국가배상청구 등
의 재판이 있다.

다. 위 가. 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지방참정권에 관해서 <헌법허용설>을 채택하였다.

在日韓國人의 國內法上 地位

柳 旭

등록법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그 거주국의 공관에 주소, 호적, 병역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는 것이다(동법 제4조, 5조).

나. 재일한국인의 구성, 형성과정 및 지위

(1) 우리가흔히 말하는 재일교포 또는 재일동포는 일본에 귀화한 사람²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뉜다. 귀화하지 아니한 사람중에는 조총련계로서 북한국적을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지만, 우리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현행법 체계아래에서는 이들도 재외국민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 실제로 조총련계인사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다면 언제라도 재외국민등록을 받아 주었고, 모국방문사업에 의한 조총련계의 방

1) 朴鍾浩, 통일시대에 대비한 해외동포정책의 방향, 국회보, 1994. 11월호

2) 1952년이후 1994년까지 재일한국인중 일본귀화자는 모두 184,397명이라고 함.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174면.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 3233판결(공1994. 2548). 이 사건의 사안은 북한적(籍)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한영숙이 관할동장에게 주민등록신청을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동장이 나중에 거주용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위 한영숙은 위 주민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대법원은 위 한영숙이 재외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도 내국인 자격의 출입국으로 처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⁴⁾ 넓게 보면, 귀화한 재일교포도 해외동포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이 동포애를 잊지 않고 모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들은 법적으로는 외국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

(2) 재일한국인이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탄생된 존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무차별적인 징병 및 징용을 강행하였고, 이에 따라 1945년 폐전 당시 재일한국인의 숫자는 200만명에 달하였다. 그중 3/4가량이 종전 후 모국으로 돌아왔으나, 나머지는 이미 장기간의 일본체류로 인하여 고향에서의 생활기반을 잊어버려 어쩔 수 없이 일본체류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현재 재일한국인 사회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재일한국인의 특수성을 애써 외면한 채 이들을 무조건 다른 외국인과 동일시하여 취업, 교육, 사회보장, 경제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하여 왔다. 한마디로 일본은 재일한국인을 추방(강제퇴거), 관리(지문제도) 및 동화(국적법상의 부모양계주의 및 귀화유도)의 대상으로 보아온 것이다.⁵⁾ 이에 대하여 재일한국인들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조금씩 신장시켜 왔다. 외국인등록증 문제, 지문날인 강제 문제 등 우리들의 귀에도 익은 문제들이 바로 재일한국인들이 생존을 위하여 벌여온 투쟁의 제목인 것이다.

4) 정인섭, 위 책 132, 133면

5) 韓勝憲, 在日同胞에 대한 關心의 再考가 要請된다. 儒胞政策資料 제31집, 海外儒胞問題研究所(1989), 40면

6) 신동아 1988년 4월호 "숨은 강자, 재일교포 사업가들".

7) 김효순, 가까운 나라 모르는 나라, 한겨레신문사, 192면.

(3) 재일한국인은 재외국민 중 어느 누구보다도 모국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고 받아왔다. 롯데와 신한은행으로 대표되는 상공인들의 모국투자는 경제성장에 적지 아니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고,⁶⁾ 다른 한편 내정권에 의하여 적지 않은 교포들이 간첩으로 몰리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⁷⁾ 모국의 분단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재일한국인이며, 모국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함께 하여 온 것이 역시 재일한국인이다.

2. 재일한국인은 在外國民이다.

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재일한국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해외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국내사정상 해외동포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해외동포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惠民政策이라 할 만큼 無關心으로 一貫하였던 것이 우리政府의 政策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위 헌법 제2조 제2항은 1980년 헌법 개정시 새로이 규정된 것으로 위 규정은 재외국민이 외연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 이들 재외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바로 이 대원칙 하에서 재외국민의 지위에 관한 제법령 규정은 입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재일한국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여러 학자들은 위

헌법 규정의 제정이 있은 후 재외국민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교민청설립 및 재외국민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의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⁸⁾

나. 재외국민의 특수지위

(1) 그런데 재외국민은 그 생활의 기반이 국내가 아니므로 그 국내법상 지위를 일반국민의 지위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재일한국인 남자는 병역을 면제받고(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보면 거주자가 아닌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며, 나아가 외자도입법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받아 면세의 혜택을享有하기도 하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2호,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판결, 공1993, 633). 반면 외국인토지법(1994.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뀜)으로 가보면 재일한국인은 동법의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판결, 공1981, 14437).

한편 재일한국인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일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제반 법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어떤 영역에서는 내국인보다 불리하게 어떤 영역에서는 유리하게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문제는 위 관련법들이 내국민에 비하여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개별규정별로 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 점에 관하여 재일한국인 중 상당수가 모국에서 조차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⁹⁾ 사실 위 법들의 입법시 과연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3) 그런데 이제까지 재일한국인들의 문제에 관하여는 주로 일본에서의 차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국내법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때문인지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 국내법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¹⁰⁾ 이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고충을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의 소재를 파악, 정리한 다음 관계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정부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 문제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주체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재외국민관련업무기관으로서 교민청 신설에 관한 건의는 이미 1970년대에 나온 바 있고¹¹⁾, 1992년 대통령 선거시에는 교민청신설이 공약사항으로까지 나온 적이 있었지만¹²⁾,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단순히 청와대내에 해외교민담당관제를 신설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¹³⁾

8) 憲法改正과 海外同胞, 한민족 1980년 2월호, 2 내지 50면

9) 위 헌법개정과 해외동포중 29 내지 32면에서 한 재일한국인은, 재일교포가 본국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려면 모든 것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상속시 재일교포는 국내사람들보다 불리하고, 세법상으로도 비거주자는 세금을 국내사람들보다 더 내야 하며, 각종 허가받기도 어렵고, 비영리사업을 할 때 아무런 보장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10) 정인섭, 위책의 제12장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임.

11) 위 憲法改正과 海外同胞 중 43면

12)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음. 동아일보, 1992. 11. 9자 3면.

13) 중앙일보 1993. 5. 12자 2면.

그러나 일개 담당관이 재외국민전반의 문제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위 헌법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⁴⁾ 이로 말미암아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은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 놓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원천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다. 현재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전원재판부결정

(1) 이러한 가운데 나온 위 헌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현재결정은 헌법재판소조차 재외국민이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¹⁶⁾라고 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다분히 시혜적인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헌법

14) 박종호, 위 글.

15) 김영광, 교민청신설을 위한 제언, 국회보 1994. 4. 통권440호.

16) 이 사건은 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단서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가 1980. 강제해직되었고, 1985. 남미 파리파이로 이민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5항이 "보상금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민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민할 때까지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2조 제5항 단서가 헌법상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외국민으로서 헌법상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여기에는 3인 재판판의 소수의견이 있다.

제2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됨을 전제로 하여 한결음 더 나아가 국가가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조항은 물론 전체 헌법정신에 합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지원"만이 보호에 포함된다고 봄은 지나치게 위 헌법 제2조 제2항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 결정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이민을 하였을지라도 의연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의연 향유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 소수의견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다른 법률에서도 국내거주국민과 재외국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 국내거주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부담 등에서 종종 처우상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교육의 권리·의무, 근로의 권리·의무등도 당연히 국내거주 국민과 국외거주국민은 그 적용에 있어 차등이 생기고 역시 거주관계 때문에 참정권은 일정범위의 제약을 받게 되고, 공무원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 등 각 개별 법에서 명문의 규정 또는 조리상 국외거주 국민의 공

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동법 제6조) 기타 사회복지후생 입법상으로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거주 국민보다 불이익한 제약 즉 차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들은 그 의무와 권리의 부담·이행·실행·행사의 가능성 등 권리관계의 성질 및 형편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조항들은 위 헌법 제2조 제2항 및 평등권에 관한 제1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그 위헌여부가 개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위 각각 규정들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마치 위 규정들 전부가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오해받을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도저히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3. 구체적인 문제들

가. 보호법의 부재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재외국민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위 조항이 삽입된지 1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모국의 입장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외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정체성을 유

지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며,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⁷⁾

(2) 그리고 위 재외국민보호기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작업을 통하여 국내법상 잘못된 것, 불편한 것을 고쳐나가고, 재외국민의 희망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77년 재일교포의사회의 전의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간이한 시험만을 통하여 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고(의료법 제5조 단서),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은 재외국민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작업을 모국의 기관이 전담하여 준다면 재외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해소됨은 물론 모국에 대한 신뢰도 한결 높아질 것이다.

나. 선거권의 문제

(1) 재일한국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재일한국인은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리 住民登録法上 居住旅券 所持의 海外國民은 30일 이상 국내 거주지를 갖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동법 제6조 제3항). 그런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소정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고(동법 제3조), 이 선거인명부는 각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주민

17) 박종호, 앞의 논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동법 제37조) 결국 국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재외국민은 위 선거법상 추상적인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15조, 제17조)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¹⁸⁾

(2) 한편 대통령 및 국회의원 편성거요건에 관하여는 주민등록여부나 거주지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편성거권이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2항). 다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편성거권이 없다(동법 제16조 제3항).

(3)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편성거권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선거이전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¹⁹⁾ 따라서 이 문제는 주민등록법 또는 위 선거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우리 선거법은 國外不在者 投票制度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동법 제38조 제1항)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길이 없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⁰⁾

68

이달의
민법
12월호

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동법 제38조 제1항)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길이 없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에 국외부재자투표의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⁰⁾

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문제

(1) 재일한국인이 국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일 것이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조총련계 학생조직이 각 대학마다 있는 등 국내외는 전혀 사회적 분위기가 다름에도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상당수의 재일한국인을 간첩 또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하여 왔다. 정확한 통계는 아님, 재일한국인들의 본국유학이 본격화된 1971년 초에 발표된 서승·서준식 형제사건 이후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110명에 이른다고 하며, 이들중에는 상당수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간첩잡기경쟁에 의하여 간첩혐의를 뒤집어쓴채 육살이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재일한국인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한다.²¹⁾

(2) 국가보안법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

18) 과거 유정희 시절에는 재일교포 국회위원이 한명 있었다고 한다. 위 헌법개정과 해외동포 29면, 38면에서 민단집행부는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입법부에 자신들의 대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19) 중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 제6조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국화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적당한 수의 귀국화교대표를 두어야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현급이하의 인민대표대회선거기간에 국내에 있으면, 원칙적 또는 출국전 거주지의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내에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미국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국외부재자투표를 통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각국의 국외부재자투표에 관한 입법례,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추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1) 김효순, 앞의 책, 192면.

법률과의 관계만을 정리하여 본다. 1990. 8. 1. 자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이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고 규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때 재외공관에 신고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잠입탈출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과 남북교류법상의 "왕래"는 그 행위의 목적을 달리하여 각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두 법 조항 사이에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 헌바48 전원합의부결정). 또한 남북교류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는 대단히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결국 정부의 사전승인없는 왕래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위반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역시 위 남북교류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법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93. 2. 9. 선고 92도1815판결, 공 1991, 1026).

라. 취업제한의 문제

(1) 구외무공무원법은 외국영주권보유자를 외무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하였다(제8조 제2항 제2호). 동규정에 대하여는 영주권보유자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외무공무원 임용만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어학능력이나 현지에 관한 지식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위 규정은 1995. 12. 6. 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지극히 정당한 법개정임은 물론이다.

(2)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 유선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요건으로 관련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를 들고 있다(방송법 제9조, 유선방송관리법 제4조,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9조, 한국방송공사법 제11조 제2호).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 상당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소가 없는 자"라고 취급되는지 의문이 있다. 일단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가질 수 없는 재외국민은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세법상의 문제

(1)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거주자 아닌 자(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2) 상속세법 제2조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내지 11조의 4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적공

제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 국내의 주소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주소지로 보되(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주소유무를 판단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인적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1990. 8. 14. 89누8064판결, 공1990, 1975면).

4. 맷는 말

제일한국인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모국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재외국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꾼꾼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모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배려하여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재외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불편, 희망사항 등을 어떻게 해결하여 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하여 보니 제일한국인의 국내 법상 문제를 다룬 글이 거의 없어 일부 문헌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만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제일한국인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국내법상 문제들에 관한 포괄적인 정리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먼저 문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제일동포 변호사 간담회 참가 소감

박성호

1

필자는 지난 94년 3월 27-28일 일본 오오사카와 코오베에서 열린 '제2회 한일 법률가 교류회'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여러 명의 제일교포 변호사들을 만날 적이 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제일동포 변호사들의 면면에 대하여 "제일동포 변호사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짧막한 글을 써서 발표하였다([제2회 한일 법률가 교류회], 1994년 민변 발행, 162-166쪽 참조).

2년 뒤인 올해 11월 2-3일에는 서울에서 '제1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 법률가 교류회'가 열렸고 행사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제일동포 법률가들과의 간담회'(이하, 간담회로 줄임)가 이루어졌다. 외람되게도 필자는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고, 간담회 참가 소감문까지 쓰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두 번에 걸쳐 제일동포 변호사들이 관련된 글을 쓰는 관계로 내용상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양해 바란다.

2

간담회에서는 제일동포인 배훈 변호사가 "제일 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한국의 유옥 변호

사가 "제일 한국인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하여 각각 발제를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김용개, 박현수, 배훈, 백승호, 윤영화, 은용기, 조성철 등 7명의 제일동포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도 최영도 민변 회장님과 홍성우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민홍기, 백승현, 송두환, 유옥, 유중원, 윤기원, 이기욱, 이동학, 이오영, 임종인, 최병모, 필자등이 참석하였다. 그밖에 일본측에서는 아즈사와 변호사와 타나카 변호사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

裴薰변호사의 발제 내용 요지는,

-제일동포들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는가?

-제일동포의 법적 지위가 일본 국내법상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특히 1952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제일 한국 조선인 등의 일본 국적 일괄 상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과, 협정 영주권 문제에서 야기된 소위 '91년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재 제일동포가 당면한 법적 문제로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공립학교 교원채용 문제, 지방공무원 채용시의 차별,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

였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참정권 문제는 日本 最高裁判所 94. 2. 28. 判決이 '현법허용설'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柳旭 변호사의 발제 내용 요지는,

-재외 국민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각종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검토하면서 법에 따라 有不利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시혜적인 것으로 보는 憲法裁判所 결정의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 보호법의 부재, 선거권 문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 취업제한의 문제, 세법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끝으로 서울대 정인섭 교수의 책을 제외하고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국내법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 법률가 등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3

배훈 변호사와 유옥 변호사의 발제가 있는 후에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다. 질문과 답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만한 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國政에 관한 참정권은 한국에서, 지방자치제 참정권은 일본에서"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가 주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었다. 배훈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에 관한 참정권을 한국에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운동 및 투표행위등 구체적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을 일본에 두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로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 구체적 이해관계

가 있을리 없으므로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그는 당면과제가 지방자치제에서의 참정권 획득이겠지만, 장차는 永住外國人으로서 일본 국정에 관한 참정권까지 얻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석에서 들으니 참정권에 관해 國政은 한국, 地方政은 일본 하는 식의 이분법적 分離논리는 주로 金敬得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농담이 "김경득설(분리추진설), 배훈설(일괄추진설)"이다.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의 일본 국적 취득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아즈사와 변호사는 시민권 취득과 귀화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한 뒤 귀화에는 민족 의식까지 바꾸는 것이 요구된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민족 의식 까지 바꿔야 귀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세계 속의 일본과 '국경없는 사회(borderless society)'를 강조 하는 일본으로서는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그런데 간담회가 끝난 뒤 사석에서 아즈사와 변호사는 필자에게 자신의 논지가 잘못 전해졌으니 오해를 풀라고 했다. 말인즉슨, 귀화의 조건으로 민족 의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자신은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귀화는 미국에서의 시민권 취득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다.

발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재일 한국인과 관련된 섭외사법적 조세문제 및 상속 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 있었다.

4

귀화 문제와 관련된 질의 응답 내지 토론이 전개되

는 가운데,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의 正體性 문제를 둘러싸고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특히 한국측 참가자들과 몇몇 재일동포 변호사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식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교육 받고 생활하다 보면 위낙 암도적으로 일본적 환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가족적 분위기가 유별나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민족성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연구 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2년전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지만, 한국측 변호사 중에는 재일동포들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서투르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실망감이나 반감을 내비치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기치로 내건 일본 사회 특유의 배타적 분위기(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과 똑같다)에 휩싸여 살다보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조차 깨닫기 어려운 터에, 여기다 우리말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민족 정체성'을 바라보는 재일동포 변호사 7명의 소감은 각양각색이었다.

- (1)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만 민족 의식 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별로 없다.
- (2) 한국 노래와 음식은 좋아하지만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부담스럽기까지 하다면서 '한국계 일본인'으로 살아가면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 (3) 한국에 유학도 왔고 우리말도 어느 정도 하지 만 민족 의식이 유별나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이를 강조하면 부담이 된다.

(4)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왔기 때문에 민족 의식에 대해 별 다른 회의가 없다.

(5) 일본 사회의 異民族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면서 민족의식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각자의 소감에 대해 상호간에 열띤 의견교환이 있었다. 주로 배훈 변호사와 (1)(2)의 의견을 내놓은 변호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 보니 통역이 우리말로 제대로 옮겨놓을 기회도 없이 토론이 진행되고 말았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5

간담회는 장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논의도 유익했다. 통역을 거치거나 한국식 혹은 일본식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진의를 그대로 전하고 반기기 어려웠지만, 모임이 거듭되다 보면 이러한 곤란함도 해소되리라 본다.

2년 전 일본에서 재일동포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나 이번 간담회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재일동포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너무 추상적이나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심하게 말해 "늘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듯 하다. 앞으로도 재일동포 변호사들과의 간담회는 계속될 것이고,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에 상응한 문제 의식의 진전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민변과 재일교포변호사와의 간담회에 참가하여

神戶辯護士會所屬 辯護士 白承豪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저희 재일교포변호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간담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변회에 참석한 것은 2년전에 고오베때 하고 두 번째이었습니다. 그 때에 만나 봤던 변호사님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는 전체회인 미군기지문제에 참가하여 오끼나와에서 참석하여 발표해주신 나카야마변호사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오끼나와에서 미군기지를 철거하는 문제는 기지노동자의 생활보상문제 철거후의 토지이용문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확립시키지 않고는 오끼나와 현민의 다수의사를 획득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본정부가 기지문제를 미국과의 외교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순수하게 오끼나와의 경제발전을 위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미군기지문제 해결에 큰 장애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인의 류구민족에 대한 잠재적 차별의식이 미군기지 문제에도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회후 민변변호사님들과 재일교포변호사, 관광을 포기하고 남아주신 일본변호사님들과의 간담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30여명의 재일교포변호사들이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교포변호사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됩니다.) 일본의 동경, 나고야, 오오사카, 코오베, 후쿠오카 등 일본전국에서 활동중인데 그 중에서 7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한 변호사 수가 적어서 일부러 간담회까지 마련해주시던 민변회에 죄송한 느낌도 있었지만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교포변호사가 7명이나 참석했다는 것에 교포변호사가 모국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한 교포변호사님과 일본이 아닌 서울에서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또 처음으로 만난 변호사도 계셔서 저희 교포변호사들 사이에도 좋은 교류가 이루어 진줄 압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포변호사를 대표하여 배훈변호사님께서 "제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교포에 관한 일본의 법령을 중심으로 교포가 놓여진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민변쪽에서는 유우변호사님께서 "제일한국인의 국내법상 지위"라는 제목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후 자유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귀화문제, 결혼문제, 본명사용문제들 간담회 주제와는 다르게 변호사라는 입장을 떠나 하나의 재일교포인이라는 입장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

니라는, 다른 뜻으로 보면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재일교포는 귀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미묘한 교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는지요.

결국은 개인의 문제라는 답이 교포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번 간담회는 처음으로 교포변호사의 실정을 밝힌 좋은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고 또 교포변호사간에도 좋은 교류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모임이 또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民主法律家協會의 辯護士先生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2,3일 韓日交流會에 招待해주시고 德分에 參加할 수 있어서 저 한테 意義깊은 經驗이 되었습니다.

具體적으로는 저는 11월 2일 司法養成分科會에 出席했는데 서울大學校 法大大學院博士課程 大學生이 發表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法律家들의 모임에 大學關係者가 積極적으로 參加하고 資料를 미리 準備하고 發表하다보니 民主法律家協會가 다만 法曹만의 法曹만 위한組織이 아니고 一般市民을 위한組織이어야 된다는理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內容도 韓國司法의 歷史와 그 分析, 現在 政府의 問題意識과 國民의 法曹에 對한 意識까지 살펴보고 檢

討하려는 態度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韓國參加者와 日本參加者의 사이에 共通한 意識이 얼마쯤 있는지 그 共通意識이 없기 때문에 論議가 깊게 들어가기 어려워지지 아닐까 疑問이 됩니다.

그 다음날 全體會에서는 美國基地問題가 主題가 되고 日本오키나와問題와 韓國問題 兩問題도 世界의 強大國美國이 既得權을 行使하는 現狀을 어떻게 바꿀까는 問題가 아닐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美國을 相對로 交涉하려면 韓國과 日本은 協力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果然 韓國도 日本도 美國基地를 다 쫓아내고 싶은 國民世論이 多數인가? 그런 疑問도 생겼습니다.

하여튼 每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사라져 버리기 쉬운 저한테 여러 생각이 든 機會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韓國辯護士들이 在日僑胞問題를 다룬 姿勢, 仔細한 資料를 準備한 걸 보니 感動했습니다.

또 日本에 있어도 만나지 못한 僑胞辯護士를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民主法律家協會辯護士님들 親切하게 待接해주세요 고맙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윤영화

심리불속행이라는 비상구

이재명

민족현대사의 비극인 군사반란과 내란 수괴들이 역사적 사법심판을 받고 있다. 아직도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히 광주를 말해야 할 때 생긴 사건과 그에 대한 변론과정을 되새겨 보기로 한다.

1980년 몇몇 개인의 정권욕에 의해 최소한 수백 명의 목숨이 빼앗긴 광주민중항쟁은 오랜시간 어둠에 묻혀 은폐되고 있었고 이를 세상에 내놓으려는 양심세력과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하는 불의의 대치가 근 10년간 계속됐다.

1990년 5월은 광주항쟁 10주년이 되는 때이며 학생들은 광주를 국민들에게 일깨우고자 전대협 출범식을 광주에서 개최했다.

성남의 대유공업전문대학의 신장호라는 어린 대학생 일행 3명은 이 전대협 출범식과 광주항쟁 추모식에 참여하고자 성남을 출발했다.

당시 광주에 원죄를 짊어지고 있던 군사정권은 집회나 시위를 광주에서 차단하는 소위 '원천봉쇄'가 아니라 사람들이 광주로 접근하는 것을 서울 등 출발지에서부터 아예 봉쇄하는 '지역봉쇄'를 감행했다.

서울과 대도시의 역과 터미널 등지에는 수만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학생과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행선지를 확인하여 광주와 광주인근으로 향하는 사

람 수천명을 강제연행했고, 광주외곽에서는 물샐틈 없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사람들의 광주진입 자체가 철저히 차단되었다. 강제연행을 면하고자 승객들이 열차를 역구내가 아닌 곳에 강제 정차시키고 철도 당국은 비상제동장치를 감시하는 경비원을 열차에 동승시키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신장호 학생 일행은 광주로 가기 위해 성남모란터미널로 갔으나 경찰의 삼엄한 검문 검색을 피할 수 없었고, 잠실역, 안양터미널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광주와는 전혀 무관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완행열차를 타고 우회하며 여인숙에서 새우잠을 자며 이후에도 수개의 도시를 거쳐 2일만에 열차로 장성역에 도착했다.

광주에서 내리면 연행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일반버스로 광주에 진입하기 위해 장성역에 하차했지만 개찰구는 경찰이 검문검색과 강제연행을 하고 있어 연행을 모면하기 위해 이들은 다시 열차에 승차했다.

일단 검문과 연행을 피해 다시 승차했지만 광주역에서의 불심검문과 연행이 명백하게 예상되었던 터라 이들은 강제연행을 피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자 역구내를 벗어나는 열차에서 뛰어 내렸는데 신장호군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 직후 경찰은 전대미문의 무자비하고 반 이

성적인 지역봉쇄행위를 즉각 중단했지만 신장호군의 사망이라는 돌발변수가 추가되었음에도 경찰이 지역봉쇄 명분이었던 '대혼란'은 오지 않았다.

이 사건후 3년이 지나면서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피해배상이 논의될 즈음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되기 하루전 유족들은 국가배상신청을 하고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전 제한조치는 위헌(위법)이며, 위와같은 방식(서울등지에서부터 접근자체를 차단하는)의 집회, 시위방해조치는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이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같은 불법행위와 사망간의 '상당인과 관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예비적 청구에서는 위와같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사상의 자유(광주피해에 대한 추도방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은 4시간이면 도착할 광주를 2일에 걸쳐 수차례 교통편을 바꾸어가며 우회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계산하지 못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위 망인의 사망결과는 위자료 참작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는 것보다 이와 같은 무지한 지역봉쇄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사법적으로 판단받는 데에 의의가 있었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지만 하면 향후 이와같은 야만적 봉쇄행위(국가에 의한 폭력)는 제한될 수 있었다.

1심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구체적 침해행위'가 없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고등법원 역시

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항소심은 임종인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셨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대해 사실심인 1, 2심의 그같은 판결은 어느정도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기각되던 인용되던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일일주점을 열어가며 인지대를 마련하고 장문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광주항쟁 10주기를 맞이한 추모행사와 전대협발족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모든 역과 터미널을 봉쇄하여 광주로 이동하는 것 조차 막는 행위가 실제 광주접근을 저지당한 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수개월 후에 나왔다.

"심리를 속행하지 않기로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판결이었다. 그 판결은 경찰의 이같은 무모한 행위를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심리하지 않기로' 하고 간단히 종결시켜 버린 것이다. 치사한 말이지만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아까웠다.

군사반란세력들에 대한 기소와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지금쯤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역시 '심리를 속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

심리를 불속행하기로 한 이유가 '심리를 계속할 가치가 없어서'인지 '복잡한 판단과 이유기재를 피하기 위해서인지가 아직도 의문이지만 후자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심리불속행제도가 명백하게 무익한 남상고로부터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하여 주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칸에 기재된 글들은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사업이나 위원회 영역의 정점사항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경제정의위원회' 소개의 글을 게재합니다.

경제정의위원회 소개

I. 경제정의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회의 소개

1. 인적구성 — 1996. 12. 5. 현재 경제정의위원회는 이용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연금, 김도형, 김석연, 김웅조, 김재영, 김주영, 김진우, 김한주, 박성호, 박진순, 유선호, 이상경, 이상수, 이승희, 조광희, 차규근(간사), 최승수 변호사 등 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김한주회원은 올 가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태이고, 유선호·이상수회원은 국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2. 회의개최 — 회의는 2주마다 저녁 7시 30분에 시민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평균적으로 7, 8명 정도의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II. 경제정의위원회의 최근 활동 소개

경제정의위원회는 올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법률들에 대한 입법활동과 이와 관련된 외부강사의 기획강연을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컨대,

- ① OECD가입과 관련하여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제조물책임법안(고연금 회원),
- ②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었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김석연 회원),
- ③ 영세점포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점포임대차보호법안(차규근 회원)과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님의 점포임대차의 실태에 대한 초청강연,
- ④ 회원체계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및 새로운 입법화 검토(최승수 회원),
- ⑤ OECD가입이 소비자관련법제에 미치는 영향(이용철 위원장) 등의 활동들이 있었고, ⑥ 녹색소비자운동에 관하여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덕승사무처장님 초청강연(6. 25.)
- ⑦ 한미통상문제의 정점과 WTO체제 하에서의 통상문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 정승일사무관 초청강연(7. 31.)도 있었습니다.

III. 경제정의위원회의 주요 입법활동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

이하에서는 경제정의위원회에서 최근에 벌였던 입

법활동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안

(고연금 회원)

제조물의 사용자나 제3자가 안전하지 못한 제조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나 판매자 등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를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제조물의 안전성 흥결에 관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그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제조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는 소위 제조물책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래의 입법논의는 일회성에 그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채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등을 계기로 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되어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있어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 1995년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입법시안 등이 제안되었고, 재정경제원(소비자정책과)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경제정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조물책임의 입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독자적 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원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김석연 회원)

원래 공정거래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초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자유와 불평 등을 제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따라 경제적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경제적종속관계를 시정코자 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념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재벌이라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존재가 바로 위와같은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정거래제도 개선의 중점적인 방향은 이러한 재벌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할 때에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제정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독자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고발권을 폐지토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점포임대차보호법안

(차규근 회원)

점포임대차에 대한 영세임차인의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시민단체에 접수될 정도로 점포임대차는 사회적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어 점포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이재오와 50인의 국회의원들이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위원회에서도 YMCA와 연대하여 점포임대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을 작성하여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증금회수보다는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해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

였고, ② 점포의 보증금과 1년간의 임대료를 합산한 액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포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영세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③ 대항력을 인정하되 점포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였으며, ④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인정하였으며, 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이 부당하게 쟁신을 거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퇴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보증금에 산입함으로써 임차인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회원제계약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 검토

(최승수회원)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대중들은 점차 여가에 대한 욕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욕구에 부응하여 각종 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소위 회원권을 매개로 하여 레저 수요자를 모으고 이를 기업화하는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바, 편의상 이를 회원권산업이라고 합니다. 회원권산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레저시설을 구비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것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회원계약)하여 회원권을 창출하고 이를 매각, 유통시키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회원권 형태로 대중을 모집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분야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바, 골프, 스포츠분야를 필두로 최근에는 각종 레저시설을 회원권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콘도미니엄, 리조트, 휴양시설 등).

그런데 원래 회원제클럽이란 고전적인 의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고전적 회원제란 회원상호의 친목, 회원상호의 연구, 회원상호에 의한 공익사업에의 보조활동을 존립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내부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규칙의 특징은 엄격한 입회조건, 상세한 탈회조치, 회원자격승계의 부정(일신전속성), 회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원의사의 반영, 회원의 친목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고유자산의 보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대형 회원제는 철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태로서 위와 같은 고전적인 회원제의 외피(내부규칙의 존재, 회원수, 자격의 제한, 양도상속의 제한 등)를 쓰고 그 소수성, 귀족성, 전일성을 대중의 수요자의 창출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고전적인 형태와는 전혀 이질적인 영리산업으로서 보아야 합니다. 현대형 회원권산업은 회원의 친목, 사교, 연구와는 무관하고 개개회원의 휴식, 건강, 취미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라이프를 위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구하는 욕구에 대응하여 조직된 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형 회원제 산업은 그 법적인 형태도 다양한 바, 고전적, 토지 등의 소유권부 회원제등이 있으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탁금제 회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회원제 계약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이 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OECD가입이 소비자관련법률에 미치는 영향

(이용철 위원장)

OECD는 회원국간의 정책협의와 정책검토를 통하여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기구로서 회원국의 경

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발전에의 공헌, 개발도상국에의 원조,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OECD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 및 26개 위원회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원회는 1969년 11월에 설치된 소비자정책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 1994. 10. 제48차 본 회의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소비자정책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1970년 대부터 80년대말까지 제정한 총 7개의 규범들을 받아들여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OECD가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소비자관련 법률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은 ① 위

해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② 리콜제도의 활성화, ③ 제품안전기준의 정비, ④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률제정, ⑥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6. 그외 활동들

위와 같은 입법활동 외에도 경제정의위원회는 참여연대와 공동하여 부폐방지법의 입법청원 기초작업(조광희 회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약관규제법·소득세제에관한법률들·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 부터 배운다

조홍식 (변호사) 김혜선 (환경법 연구실 책임연구원)

개발에 비례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양적 성장만이 지속된다면 과연 인간과 지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1세기가 가까워질수록 성장 일변도의 무차별 개발에 의한 인간의 환경 조작 능력이 가속화되고 이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지구 환경 파괴의 총체적 위기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직면하여 우리는 발전 혹은 진보의 개념 자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에 '녹색평론사'에서 번역본으로 출간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의『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원제 Ancient Futures : Learning from Ladakh)는 우리에게 인간과 지구 즉 문화와 환경간의 共進化에 관한 인식을 재고시켜 줌으로써 올바른 미래의 도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암울한 현 상태의 비판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저자 나름대로 미래사회的新로운 원리로서 설득력 있는 사회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볼만한 가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인 지은이가 척박하고 황량한 서부 히말라야 티벳 고원에 위치한 전통적인 자급 자족 공동체인 라다크에 16년간 체류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라다크의 삶과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생애사적인 방법으로 기술한 생태적 민속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혹심한 기후와 자원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존이상으로 즐기면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라다크 사람들의 생태적인 지혜로움과 전통적인 생활상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고, 개발이란 미명 하에 서구문명에 침식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견고하게 뿌리 내려온 가족관계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들의 마음이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물질문화에 노출되면서 황폐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분노가 짓들인 안타까운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어 한편의 정제된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자아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래된 미래」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서문을 필두로 저자의 프로그램 제1부 전통, 제2부 변화, 제3부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에필로그 "오래된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

라다크는 어찌보면 자연의 혜택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험난한 지형적 조건과 엄혹한 기후를 가졌다. 이렇게 제한된 환경이지만 자원을 재순환시켜 자원에 대한 낭비를 철저히 줄이고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완전한 자립에 도달하는 등 자연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존의 원칙에 충실히 상호부조의 경제 구조를 가진 농업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한 유대관계에 힘입은 라다크 사람들은 내면적인 평정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소외받고 주변부로 밀려나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우 받고 사는 건강한 공동체였다.

이러한 라다크도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라다크 개발정책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서구식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훼손과 사회적 분열이 생겨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등장하며,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이 일어나게 된다. 열등감을 조장하는 서구식 현대교육, 상호협조와 상호의존을 조장하던 정치 경제구조의 붕괴, 전통적인 의료 체계의 붕괴, 농업의 붕괴 등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온갖 산업주의의 압력밑에서 오랜 세월 유지되어온 생태적 균형과 사회적 조화가 단기간에 여지없이 박살이 나게 된다. 그 결과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원으로부터 또한 서로서로에게서 완벽한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상호작용은 익명의 관료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작용하고 지역내의 상호의존의 조직이 와해되고, 전통적인 수준의 관용과 협력도 사라지게되어 공동체의 결속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근대적 개발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발과 배움이 오직 한가지 방향으로만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달라이 라마의 서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사회는 나름대로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산재하고 있고 또 개발 덕택에 실제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식 개발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들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 진보와 경제성장을 통하여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계획된 변화과정은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자연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사회가 여러 가지 결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지속가능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환경적인 면에서 이 지속가능성은 아주 중요하다.

개발이 반드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행해질 수만 있다면 인간은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행위를 정당화하는 과학기술 낙관론을 취하여 고도의 기술과 물질소비를 사회적 진보의 궁극적 지표로 삼는다면 오직 극소수의 인간들만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채 단기적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인한 장기적 피해, 즉 적절한 생존의 조건이 파괴됨으로써 빚어지는 피해는 전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가 이를짊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즉각적인 부담은 성장의 주변부에 자리잡은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자원은 유한하고 성장의 한계는 뚜렷함이 명백한 사실이 되어 있는 마땅에 생태계의 위협을 초래하는 무제한의 개발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파괴

하는 일일 뿐이다.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굶주림에 앞서는 가치는 분명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는 항상 우리를 따라 다니는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울리하지 않을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저자는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누려온 사회적, 생태적 균형을 회생하지 않고도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느,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오래된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기초 위에다 건설하는 좀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개발'(counter-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적 규모의 탈중심화된 개발패턴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초한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기술로써 표현되는 이 반개발은 저자가 무분

별한 서구식 산업주의의 길 이외에도 사회발전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라다크에서의 성공적 실험으로 일깨워줌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그리 암담하지만은 않음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본향이며 인간도 자연이다라는 말이 종교나 신학에서만 성립하는 명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에 대칭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 속하는 존재이며, 자연은 단지 인간이 이용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공존해 나아가야하는 인간의 생존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인간이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하듯 존중해야하는 것이다. 「오래된 미래」에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깨우쳤던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되뇌이게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헌법에 대한 뜨거운 정열

- 한상범저 『바보놀이 공화국』-

정주식

1

『바보놀이 공화국』 저자인 한 상범교수는 헌법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법을 보장하는 최고법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Loewenstein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력과정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담당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헌법은 또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태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 보장의 규범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간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다.

한 상범교수는 헌법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사의 당면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에서 자유에의 기술로서의 헌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는 곧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으로 이번에 『바보놀이 공화국』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이전에도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관료주의와 기본적 인권」 등의 저서 등을 통하여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우리사회에 인권과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한 법문화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하여 오다가 이번에 『바

보놀이 공화국』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들—특히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무랄과 타이름 때로는 탄식을 토해내고 있다. 저자의 헌법에 대한 뜨거운 정열은 이책의 서문에서 인용된 "나찌의 암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사람은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 눈물을 쏟는 감격을 스스로가 모두 체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는 토마스 만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가끔 신문지상에 기고된 정치·사회 평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저자를 접하여 본 적이 있지만 전혀 생면부지이다. 그러나 저자의 헌법이 지켜져야만 우리의 민주제도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저자의 절박한 헌법의식에 감동을 받아 난생 처음으로 서평이라는 것을 써 본다.

2

이 책은 한국사회의 노예구조라는 부제하에 제1편 문제의 근본을 파져보자, 제2편 민주발전과 어문정책의 문제, 제3편 민주주의 법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들, 제4편 헌법과 정치사이, 제5편 법제근대화와 전근대

적 유산, 제6편 민주와 인권에의 좌표 등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마다 장을 나누고 각 장마다 소제목을 달아 일견 소제목의 목차만 일람하여도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저자가 전편에 거쳐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배구조가 혈연, 지연, 학연을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로부터 친일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역대 군사정권이 일제 식민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민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아직도 노예구조라고 분석한 다음에,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여 우리가 시민의 시대를 스스로 열고, 자유를 지키고 책임을 존중하는 자주적 인간이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제1편 “문제의 근본을 따져 보자”에서 저자는 우민정책과 반민주 수구세력의 뿌리에 관하여 서술하는데, 위 제1편은 이 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만사를 망치게 된다라고 시작하는 글에서는 요즈음 언론계에서 사용하는 통치권자라는 용어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법작용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작용으로서 ‘통치행위’라는 개념과 ‘통치권자’라고 하는 전 근대적 전제군주의 법초월적 특권같은 것을 혼성하여, 법치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특수지대 특수인물의 무책임성과 법초월성이 통하는 무법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궤변으로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상·의견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이나 당파가 서로 대립·경쟁하여 정치권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한국법정에서 E·H 카야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공산서적으로 감정되는 등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것은 민중을 가지고 바보놀이를 하는 것으로 더이상 민주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제2편 「민주발전과 어문정책의 문제」에서는 한글 전용반대 세력에 대하여 일제 우민화 정책의 답습과 권위주의 지배의 정치구조가 낳은 한국사회 노예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학문적 이유외에도 사회적·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동기 및 목적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글전용반대세력과 한글전용주장은 보수기득권층과 민주세력 사이의 문화투쟁이며, 우리가 노예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문정책의 민주화와 대중화 및 과학화를 하여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제3편 「민주주의 법문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구조물들에 대하여」는 혈연, 지연 및 학연에 얹매이는 한국의 지식인들에 대한 초초하고 참담한 저자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일본의 패망이후에 우리가 이를 청산하지 못한 채 근대화의 기틀을 잡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친일세력 주도하의 정부에서 냉전시대의 논리로써 정당화되었으며, 결국 반민족기득권 세력의 정치탄압의 제도적 장치로 전락하여 더욱 개악되고 확대재생산 되었기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문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일제의 잔재 중에 관료주의의 폐습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 관료주의는 조선시대의 관존민비 사상과 결

합하고 군사정권하에서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개발독재체제로 더욱 강화되어 현재 우리사회의 온갖 병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4편 「헌법과 정치사이에서」는 우리헌법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가를 헌법원리의 탈헌법화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아직도 우민정치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참으로 의식을 작성시키는 일대 계몽운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헌법이 왜곡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과 역대정권의 이데올로기 편에서는 헌법정치에서 역대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상징 창출을 통해 본 문제점을 밝히고,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현정에서 배제하고 헌법에의 의지 또는 법의식을 통하여 우리헌법이 참으로 국가작용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힘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바램은 국민 스스로가 헌법정치에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처방도 하고 있다.

제5편 「법제 근대화와 전근대적 유산」에서는 왜 우리의 법제와 법사상이 일본의 나쁜 유산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와, 한국관료주의의 사상의 뿌리와 일제식 민지 관료주의의 공생·유착문제를 따지고 있다. 또한 시민혁명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한 아시아 사회에서 관료주의는 권위주의와 함께 개인을 정신적 노예의 사슬로 얹어 매는 제도적 질곡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법학의 기본작업을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의 정체를 폭로·규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대한 과학

적인 법률인식을 통한 사회인식이 있어야, 관료법학에서 민주주의 법학으로 또 관료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6편 「민주와 인권에의 좌표」에서는 문민시대의 개혁과 인권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결론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여야만 민족·인권에의 길로 접어 들수 있다는 것이다.

4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헌법이 지켜져야만 우리의 민주제도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절박함이 없음을 아쉬워 하고 있다. 저자의 헌법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머리말의 부제인—〈자유에의 기술〉로서 헌법에 대한 감격이 솟구치도록—이라는 구절과 머리말에서 인용한 하이네의 시가 응변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헌법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헌법에서 정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생존의 조건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가지고 못한다면 오로지 도살을 위하여 사육되는 돼지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은 지배의 대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존엄성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편집자주) 김기식씨는 현재 참여사회시민연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변호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1

자라 오면서 남들은 흔히 갖는 판·검사에 대한 꿈을 단 한번도 꾸어 보지 않은 나는 94년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변호사란 존재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내가 변호사를 처음 접한 것은 86년 첫 번째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때로 기억한다. 재판이 끝나갈 때쯤 웬 사람이 일어나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한마디 하더니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수괴급도 아니었고 대개의 시국 사법들이 그러하듯이 재판을 잘 받아 나가리라는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호송 교도관을 통해 비로소 그 사람이 국선변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변호사에 대해 그나마 알기 시작한 것은 91년 가을,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한 때부터다. 그 뒤로 수많은 운동의 동료, 선·후배가 사법고시의 길에 들어섰고 법조인이 되었다. 나중에는 지방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던 친구를 설득해서 사법고시를 보게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에 대한 인상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시국사건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공판기일을 기억하지 못해 출석치 않아 공판을 연기시킨다든지, 준비서면은 고사하고 공소장과 사건기록조차 보지 않고 나와 변론 한마디 없이 재판을 끝냈던 현장활동중의 몇 차례 개인적 경험은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솔직히 고백한다면 90년대 들어 비디오가 보편화되면서 가끔씩 보게 된 미국 법정영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이 미국 문화와 사법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적어도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인의 상식(?)-정역안에서는 거의 진리로 통하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 문학적 충격이었음을 분명하다.

이런 나의 기준 관념은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크게 변하게 되었다. 하루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이 새벽에 사무실에 남아 원고를 쓰게 만든 차모변호사나, 샌님 같은 인상과는 달리 입을 열었다 하면 거친 소리가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투덜이 이모변호사 등등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만난 분들은 인간적으로

나, 운동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나의 기준 인식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다. 가끔 바가지에 시달리지만 아내 같은 변호사와 평생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나로서는 그래도 이렇듯 좋은 분들을 만난 게 참으로 다행인 듯 싶다.

원고청탁을 받은 뒤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첫째는 팬스레 앞서 쓴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는 바람에 생긴 비교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고, 둘째는 혀를 잘못 놀려 인심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어린 시절 어머님의 가르침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회한들 어찌리. 그 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장기판에 훈수는 젖값을 치러야지.

2

민변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시국사건 일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민변활동의 중심은 시국사건 변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변론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운동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고,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의 일부로서 민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이러한 민변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국사건의 정치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민변출신을 포함한 변호사의 정치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변호사의 사회활동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일반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민변의 재야적 정체성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상황의 변화와 함께, 민변의 회원층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과거 소수 활동가 조직에서 지역대중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변호사 수의 증대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외부적으로도 변호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운동적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민변 내부적으로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제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의 운동적 발전 전망과 민변의 조직발전전망이 실천의 과정에서나 주체의 측면에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운동의 정치적 역동성이 거세된 오늘의 현실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시민사회운동은 제도, 정책적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이후 상대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바로 이런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 정책적 수준의 운동에서 법률가, 해당 분야의 연구자, 운동가의 삼자결합은 핵심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운동의 각 분야별로 변론이나 법률적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 단체의 일원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할 변호사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할 것이다. 또한 변호사들 중에서도 지역대중단체로서 민변의 조직적 한계를 넘어서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운동적 요구 역시 비록 소수이겠지만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적 요구를 민변이 무리하게 조직적으로 수렴하려고 할 경우 강화되는 지역대중단체로서의 성격과 충돌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사회운동에 있어 변호사의 활동과 역할이 민변으로 조직적으로 수렴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나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운동의 발전에 따라 운동의 다양한 질이 분화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다만 그것이 꼭 조직적 분화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변활동과 사회단체 활동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질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민변의 활동가적

질을 여하히 담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변이라는 조직적 틀 안에서 완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의 운동적 발전전망과 민변의 조직발전전망을 구체화시킬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변은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민변의 조직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지역대중단체로서 위상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예로 변협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그러하다. 우리사회에서 제도권 지역단체로서 변협과 동일 지역내의 진보적 운동단체로서 민변의 관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특수한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변협이 지난 위상을 고려할 때 민변이 변호사사회 내부에서 자신의 위상을 유지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민변자체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변의 회원은 전체 변호사의 약 7% 정도를 차지한다. 언뜻 소수인 것 같지만 변호사관 직업의 특수성상 조직화된 7%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한 3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현실에서 민변이 변호사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선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회원을 확대해야만 한다. 동시에 회원의 확대는 다양성의 확대를 수반한다. 따라서 회원 내적인 통합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조직 내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같이 비관련 다각화된 조직보다는 덜하지만 민변 역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사업영역을 설정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회원 내부의 다양한 요구를 조직과 사업 속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양성속에서도 하나의 조직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개별적 활동을 포괄하는 중심적 운동개념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은 변호사단체로서 민변의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나는 민변이 종합적 인권센터로서의 발전전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면 민변이 운동적 의미를 갖는 지역대중단체로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호사윤리강령의 제정등 사법개혁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나는 작년 사법개혁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 변호사들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기득권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타의 문제에 대하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취해 온 민변이 유독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는 수구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당시의 민변은 한·약분쟁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문운동단체가 보여준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수많은 논리 중 특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숫자가 늘어나면 질이 떨어져서 안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논리 뒤에 오만한 엘리트주의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천3백만 국민 중에서 한해에 3백명만이, 그리고 전체 6천여 명의 법률가만이 사법적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논리 속에서 법은 더 이상 최소한의 상식, 규범이 아니다.

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다른 비판의 논리는 숫자의 문제로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도했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이 법조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숫자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숫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 민변 변호사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비록 현실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의 심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 전두환의 다시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심리와 동일하다.

또 한가지, 사법개혁의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법조

인들은 소수의 문제를 빌미로 다수의 양식있는 법조인을 매도했다고 비난하였다. 변호사 문제만 하더라도 소수 전관 변호사의 문제를 변호사 일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정치적으로 몰아부침으로써 개혁의 정당성을 찾았다고 비판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소수의 문제로 인해 그 집단 내부의 다수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뿐 반대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제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유로 하여 현재의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당위가 헤嗣될 수는 없다. 수구와 보수의 논리란 바로 개혁이 수반하는 또다른 문제를 이유로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시 사법개혁안이 질의 저하와 경쟁의 폐해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고 하더라도 국민이 현재의 사법제도안에서 당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사법접근권의 제한 등 기본권의 침해를 계속 감수해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를 무엇보다 실망시켰던 것은 당시 민변의 변호사들속에서 비판과 반대의 논리 이외에 개혁의 대안을 들어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년 그런 흥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입장은 고사하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지 못하다.

민변이 지역대중단체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변협과는 달리 동일한 지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운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법개혁문제와 관련하여 민변이 지역의 이익과 국민적 요구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하다.

세친구

이유정

글쓰기에 앞서

글쓰기란 자신을 낱낱이 드러내는 행위이다. 때문에 글쓰기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사실의 서술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떠한 글이든 일단 활자화되고 나면 글쓴이의 생각, 인격, 가치관, 교양, 취미, 경력등이 그대로 드러날 수 밖에 없으니, "소장·준비서면류"의 글 이외에는 써본적이 없고, 영화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도 별반 없는 나에게는 인권영화소개를 쓰라는 숙제가 국민학교 시절 개학을 앞두고 머리를 짜내며 한달치 방학일기를 쓰는 일만큼 어려웠을 수 밖에……

하여튼 숙제는 해야겠는데…."인권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권영화"를 보고 무언가를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극장 갈 시간이 있나. 도대체 재판기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한달이 눈깜작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신문광고를 뒤적이며 뭐 "인권영화" 같은 거 없나. 마침 모 대학에서 "인권영화제"를 한다니까 거기에 가볼까. 궁리를 하던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권영화"라

고 불러도 무방한(?) 영화를 한편 보게 되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세친구"라는 제목의 영화가 바로 그것이다.

"세친구"

영화감독 임순례씨. 그녀는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우중산책"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작품상과 짚은 비평가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젊은 감독이다.

영화 "세친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속에 상영되었는데 막상 개봉극장에서는 예술영화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관객동원에 실패하였고 결국 거품인기가 아니었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여튼 최근 YMCA에서 "세친구"를 학부모와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영화"로 추천하며 관람을 권유하고 있다니 어쩌면 "대학입시에 떨어지면 세친구처럼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극장을 찾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듈다.

표면적으로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성인남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래서 사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스물남짓한 사내아이들의 현실이다.

영화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등상을 받는 학생들을 호명하는マイ크 소리. 그리고 가족들과 꽃다발에 둘러싸인 졸업생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누구에게나 졸업·사회의 첫출발을 축하받지 못하는 무소속, 삼겹, 섬세 세친구가 학교문을 나서 변두리 짜장면집에서 졸업을 자축하는 모습으로부터……

세친구는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들만큼 결모습뿐만 아니라 성격도 판이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난한 산동네에서 산다는 점. 이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하루종일 바둑판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훌아버지와 함께 사는 무소속은 만화가지망생. 직접 창작한 만화를 출판사에 보내기도 하고 유명한 만화가 사무실에 연구생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려고도 하지만, 복종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무실을 뛰쳐 나온다.

월남전에 참전한 경력이 유일한 자랑거리인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미용실을 경영하는 어머니를 둔 섬세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눈을 피해 미용학원에 다닌다. 섬세의 여동생은 어린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고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본드를 마시는 등 한마디로 비행청소년인데 이처럼 기대에 어긋나 기만 하는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술과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아버지 때문에 집안은 늘 난장판이다.

삼겹살집을 경영하는 비만증세가 완연한 부모와, (어디서 캐스팅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빼닮은) 비만체질을 닮은 형제들과 함께 사는 삼겹은 원없이 비

디오 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인데 우여곡절 끝에 비디오 가게 점원으로 취직하여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그나마도 나중에는 타고난 게으름과 대책없는 몸무게 때문에 해고되는 운명에 처하지만.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보기도 하지만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라 애초부터 없어 보이며 결국 이러한 이유로 좌절하게 된다. 세친구가 담벼락에 기대어 무료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장면.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간신히 피어 있는 길가의 풀꽃처럼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한다.

그런 세친구에게 어느날 입영통지서가 날아든다. 군대! 한국의 성인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엄숙한 통과의례.

이때부터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주인공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된다. (참고로 밀하면 영화는 시종 일관 우울한 분위기이며 등장인물들이 웃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다. 이 장면은 관객들이 웃을만한 유일한 장면이다.)

무소속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어깨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에서 뱃속이 까맣게 보인다는 속설을 믿고 잉크를 먹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무난히 신체검사에 합격한다. 삼겹은 "돈도 없고 뼈도 없는" 자신이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특기를 살리는 걸 뿐이라며 쉴새없이 먹어대 몸무게를 늘인 덕분에 군대를 면제받는다. 반면 자신의 심약한 성격에 회의를 느끼 군입대를 결심한 섬세는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입대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

무소속이 입대한 후 남은 두 친구는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고……. 어느날 그들앞에 군대에서 상관에게 폭행당하여 청각장애자가 된 무소속이 돌아온다.

영화는 청각장애자가 된 무소속이 혼잡한 시장바

닥을 지나 그늘진 뒷골목으로 걸어들어가는 뒷모습에서 끝을 맺는다.

세친구-한국 남자들의 인권보고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산업사회에서 남성다움·자신감, 독립성, 적극성, 공격성, 경쟁적, 야망 등은 여성다움에 비해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다. 남성적인 것이 우월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다움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남성적이지 못한 남성들·특히 경쟁에서 패자가 된 남성들은 주변 부로 밀려나 열등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위해 연약한 사내아이들은 수차례의 폭력적인 통과의례를 거쳐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다움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들 또한 힘과 능력을 골고루 갖춘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와 가정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자다운 남자가 되기 위해서 사내아이들은 아무리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받으며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경쟁에서 낙오한 사내아이들의 초라한 현실. 무소속은 조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도는 인물이며, 삼겹은 효율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무능한 인물이며, 섬세는 타고난 비남성적인 성격과 외모 때문에 남성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상처받는 유약한 인물이다. 이들은 사회의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좌절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직과 제도의 폭력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간다.

영화는 가난한 산동네의 황폐한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사회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지 고발한다. 교사가 학생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상관이 부하를, 힘센 남자가 약한 남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되풀이되고, 그러한 일상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사의 승용차를 때려부수고,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의 주머니를 터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 폭력성이 우리의 현실이다.

폭력 속에서는 모든 것이 획일화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또는 군대를 다녀오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혀 가정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남자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도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 또는 편입될 수 없는 "신세대"들은 흔히 말하듯 "톡톡튀는 개성"을 발휘하거나 "뚜렷한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못한채 섬세의 여동생처럼 고작 친구들과 어울려 환각제를 마시거나, "신세대"다운 헐렁한 패션을 모방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할 궁리를 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남성다움을 획득하지 못한 사내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행복추구권"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영화는 이러한 한국남자들의 인권실상에 대한 소박한 보고서이다.

흔히들 군대에 갔다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고 한다. 군대는 사내아이들을 남자답게 단련시켜주는 훌륭한 교육의 장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제도적인 폭력을 재생산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군대에서 연약한 사내아이들은 힘과 권위에 복종하는 법과, 조직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다스리는데 있어 폭력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밀하는 남자다운 남자란 폭력을 사용할 줄도 알고 폭력에 굴복할 줄도 아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군대를 통한 사회화가 한국 남성들에게 주는 상처를 그리고자 했다는 말을 했는데, 군인들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늙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먹이는 장면이 매주 되풀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군대·나이가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에서 남자들이 받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성으로 대변되는 "여성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이 영화는 힘=폭력=권위=강인함=남성다움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결합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좋은 영화"이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들의 대부분이 선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둘러 결말을 지으려는 것에 비하

면 얼마나 참신한가. 대안없는 현실에 대한 평면적인 서술이야말로 이 영화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한 장면에 대한 부연설명.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극장안에 있던 대부분의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랑과 영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오히려 키킥 웃어대다가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남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E.T"의 한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나의 무분별한 감수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사람들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소속이 입대전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내일 군대가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나는 가슴이 저려와 눈물까지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친구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처지로 군에 입대했던 남동생의 입영전날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